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법무뉴스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체결
이슈발언대 _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문화의 멋
법률이 있는 영화 _ 검사외전

생활의 맛
마음을 나누는 수화 _ 오늘 바쁘세요?

생활법률 전문가 119단

법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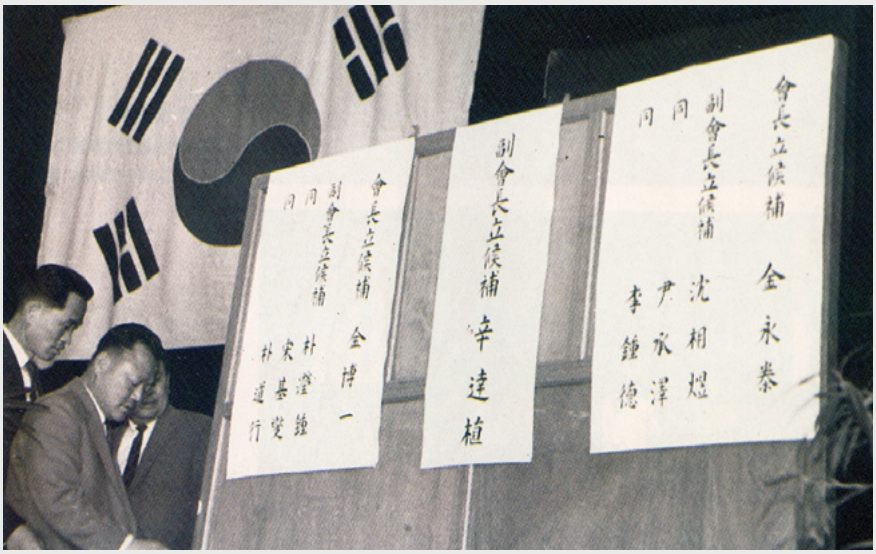
2016
05
vol. 587

BEOMMUSA LAWYER



ISSN 2233-4688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1964. 4. 26. 서울사법서사회 제2회 정기총회 회장단선거 장면

1964. 4. 26. 서울사법서사회 제2회 정기총회

1963. 4. 25. 법률 제1333호로 「사법서사법」이 공식 제정되면서 서울사법서사회도 1963. 6. 9. 지방회로서 다섯 번째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당시 사진은 남은 것이 없고, 이듬해인 1964. 4. 26. 광화문 시민회관(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2회 정기총회 사진이 남아 있다. 당시 지방회 총회 사진 중 유일하게 회장단 선거 모습을 담았다. 당일 선거에서 김영태 사법서사가 회장으로, 송기섭·심상욱·이종덕 사법서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생활법률 전문가 119년

법무사

Contents







법무사 FAQ

02 **법무사 119년 그때 그 시절**

06 **한눈에 보는 법무사**

_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

99 **내가 만난 법무사**

100 **법무사가 하는 일 ⑤**

_ 소송(민사·형사·행정·회사)

인터뷰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_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생활 속 법률

1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출생편 1. 태아도 권리가 있을까요?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법무 뉴스

8·50 **업계 핫이슈**

_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 체결

_ 협회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_ 협회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 개요와 전망

34 **이슈 발언대**

42 **주목할 만한 법령**

61 **입법·업계동향**

실무 지식

64 **법무사 실무광장**

_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에 관한 개선 방안

_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문화의 멋

04 **사진이 담은 이야기**

78 **공감 인문학**

_ 「일리아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82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사람아 아프지 마라』

84 **법률이 있는 영화**

_ 「검사외전」

생활의 맛

86 **좌충우돌 와인 습득기**

87 **미래가 보이는 신기술·신제품**

88 **마음을 나누는 수화**

89 **생활 속 민간요법**

동정 등록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4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6년 5월 5일 통권 제587호 **디자인·인쇄** 디자인공장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황매산 철쭉, 천상의 화원

5월이면 온 산 가득 붉게 물들이는 철쭉동산, 황매산 자연화원으로 달려가고 싶다.
드넓은 고원에 양 무리처럼 옹기종기 모여앉아 곱게 곱게 꽃을 피우는 철쭉의 향연.
시선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이르는 곳마다 붉은 꽃잎에 마음이 사로잡혀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탁 트인 산 위에서 바라보니 천상 화원이 여기로구나.
덕을 쌓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지,
끝없이 펼쳐지는 꽃물결에 마음을 싣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오른다. 법무사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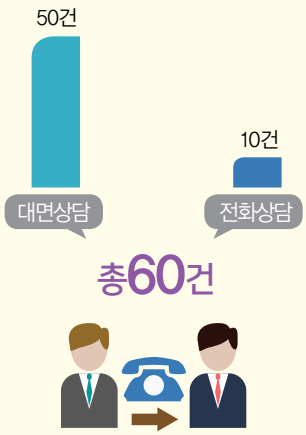
김보통 법무사는 올해 개업 7년차의 중견법무사입니다. 안양 동안구청 근처에서 사무원 3명과 함께 일하고 있지요.
개업연수와 사무원 수, 업무 분야 등에서 김보통 법무사는 이름 그대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보통 법무사라 할 수 있습니다.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를 따라가며, 대다수 법무사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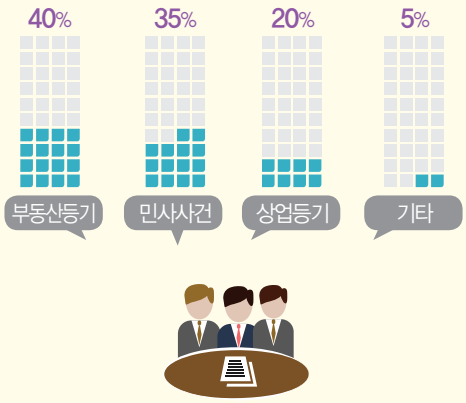
김보통 법무사는?

- **이름** : 김보통
- **나이** : 45세
- **성별** : 남성
- **개업연도** : 2010년
- **사무소 위치** : 안양 동안구청 근처
- **사무소 크기** : 25평
- **사무원 수** : 3명
- **업무 분야** : 등기(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민사사건, 경매, 소송 및 비송사건 서비스 등 다양함.

김보통 법무사의 한 달(2016.3.)



상담건수



수임사건의 유형과 분포

출근 오전 8:30

사무원과 간단한 하루업무 점검 회의 9:00

김포 소재 모 제조업체 회장과 미팅 (회장 개인의 증여사건 및 회사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제안 논의) 10:00

안양에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점심식사 겸 미팅 (인천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오후 12:00

안양 사무실에서 고객과 대면상담 등 업무 (배우자 폭행에 의한 이혼 사건) 13:30

경기도청에서 무료법률상담 (법률상담위원 자격으로 주택임대차 등 8건 진행) 15:00

안양 사무실에서 간단한 저녁식사 후 경매입찰 의뢰인 상담 (오전 서울중앙지법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한 입찰 유보건) 18:30

'유체동산 집행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 답변서 작성 (대법원 상고심 사건) 19:00

퇴근 22:00



김보통 법무사의 하루(2016.4.5.)

① 협력세무사와 미팅(증여 건)

② 법인 대표와 미팅 (법률업무협약 건)

③ 주식회사 대표이사 미팅 (증자에 따른 자녀 증여 방법 상담)

④ 오피스텔 대표회의 대표 및 관리소장과 미팅(업무협약 건)

⑤ 안양시 평생교육과장과 미팅 (상속 · 증여 특강 건)

총5건



영업활동 미팅 건수



국제봉사단체 헌혈봉사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 | 법원 무료법률상담

총10시간



공익활동 시간



대한법무사협회–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 MOU 체결 및 위촉식 개최

국민의 생활터전, 더 가까이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55) · 창업센터(5) · 노인복지관(11) 등 71개소, 1:1 매칭 지정법무사 89명 위촉

이제부터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의 상인, 산업단지 창업센터의 창업자들, 사회 및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법무사로부터 무료 법률상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는 지난 4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함께 하는 협약'(MOU)을 체결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익법무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서울지역 지방법무사회장단, 박원순 서울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천한 89명의 법무사가 서울시로부터 '공익법무사'로 위촉장을 받고,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지난해 8월과 12월, 법무사들의 지역 밀착 공익활동 확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공익법무사제도'를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협회는 내부적으로 공익법무사 TF팀(팀장 우찬호)을 구성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법무사들은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과 상점가 55곳, 창업센터 5곳, 사회·노인복지관 11곳 등 현재 확보된 총 71곳의 시설








'공익법무사'가 찾아갑니다!

5월부터 월1회 방문 및 전화 무료법률상담 활동,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 노력

중에서 사무소와 가까운 시설에 1:1로 매칭되어 월 1회 직접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 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공익법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지정된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통시장에서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을, 창업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에 관한 상담을, 사회·노인복지관에는 고령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속과 증여, 가족관계 및 성년후견 관련 생활법률상담을 특화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앞으로 협회는 공익법무사의 공모 및 추천, 시설과의 매칭,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지원, 상담실적 수집과 서울시 송부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서울시는 협회 추천 법무사의 공익 법무사 위촉, 대시민 홍보 및 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진행 및 운영, 그리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의 확대를 검토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다.

노용성 협회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공익활동들이 이번 협약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법무사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번 1기 공익법무사 활동의 성과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법무사, 서울시 법치 시정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지난 4월 14일, 대한법무사협회는 서울시와 '공익법무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의 법률가'라는 법무사의 캐치프레이즈를 하나의 체계적인 제도로서 완성시켜낼 수 있었던 데는,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적극적으로 챙겨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힘이 컸다. 법원공무원으로 정선등기소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시장은 누구보다 법무사에 대한 이해가 넓고, 서울시정에 민간의 역량을 접목시키는 '민관 협력사업'에 적극적이다.

지난 3월 29일, 총선을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박 시장과 어렵게 약속을 잡고, 서울시청을 찾았다. 벽면 가득 업무파일로 빽빽한 책장과 수북이 쌓인 서류더미들이 올라앉은 책상, 재활용 제품인 듯 낡은 회의탁자, 그의 집무실은 상상하던 시장실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너무 달랐다. 민선 6기 서울시정의 현황과 그의 시정 철학, 향후 법무사협회와의 공조 방안 등 그날의 대담을 풀어본다. 〈편집부〉 •사진 _ 김영식 디자인공장

민선 5기는 분쟁해결, 민선 6기는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

Q 5월부터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협력 추진하는 '공익법무사단' 활동이 첫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제도가 잘 시행되도록 챙겨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법률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법률가 분들이 바로 법무사님들이고, 실무를 또 잘하시잖아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무사님들이 공익활동을 한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법무사님들은 공익법무사단의 출범으로 법무사제도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니까 전체 위상이 올라가서 좋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시민들은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안 할 이유가 없지요.

Q 시장님께서는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이미 인권변호사로, 참여연대나 아름다운 재단 등 시민운동가로 유명하셨고, 정치에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어 행정가로 변신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시장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 정치 입문에 대한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치보다는 평생 시민운동가로 사는 것이 꿈이었어요. 시민운동가로서 사회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당시 새로운 구상을 위해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더군요. 그래서 산을 내려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검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에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변화를 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동력은 동일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내게 주어진 역할을 피하지 않고 다하겠다는 것이죠.

Q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를 지나 민선 6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민선 5기 시정을 뒤돌아보며 간단한 평가를 한다면 어떠신지요? 더불어 이번 6기의 시정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정을 평가하는 건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몫인데요. 저는 그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시민이 곧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합리와 균형에 입각해 서울시정의 체질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법무사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 문제나 지하철 9호선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오랜 갈등으로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문제들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소송까지 해서 민간투자자를 바꾸고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3조2천 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고요.

민선 5기에서는 갈등의 뿌리를 제거하고,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6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에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려고요. 그리고 R&D나 디지털, 관광·MICE 등 미래 신성장 사업도 육성해 세계적인 혁신도시로서의 입지도 지켜나가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

Q 지난 2월 선언하셨던 '경제민주화 서울'과 연관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선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요?

'경제민주화 서울'은 서울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균형, 불공정 관행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요. '시민의 삶'에서 경제민주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내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간과 협력해 악성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들이 있고, 최근 프랜차이즈나 건설하도급 등의 갑을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또, 요즘 열심히 장사해서 매출 올리고 상권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월세가 크게 올라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심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상인들이 상가를 매입해 안심하고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의 매입비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서울시의 정책적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만나 함께 밥 먹고 대화하면, 뭐가 좋은지 다 나와요!

Q 결국 그런 정책들은 복지제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반값등록금이라든가, 최근의 청년수당 등 지자체로서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복지철학과 서울시의 구체적인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는 시혜나 낭비가 아닙니다. 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지요. 요즘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성장도 같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시대이다 보니 사람에게 투자하는 복지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채무를 열심히 갚아서 7조8천 억 정도 빚을 줄인 대신, 복지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2016년 복지예산이 1조9천억 원 늘어났죠. 2012년에는 올림픽펜싱 경기장에 시민 1천 명이 모였어요. 원탁회의를 열어서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민복지기준' 10대 핵심정책을 만들었지요.

지난해에는 시급 6,687원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확정해 서울시 본청과 산하 투자기관 근로자들 임금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정책이나 누리과정 등 촌음을 다투는 복지과

제들이 소모적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국가와 도시는 한 몸이에요. 국가·도시·시민이 순망치한의 관계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를 펴나간다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Q 시민 1천 명이 서로 소통해 복지정책을 만들었다니 신선합니다. 서울시의 많은 사업들이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시정철학 핵심이 '소통과 협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누굴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좋은지 다 나와요. 법무사협회와 공익법무사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도 그때 협회장님과 서울지역 회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말씀 나누다가 나온 거잖아요. 듣고 보니 좋은 제안이고 못 할 이유가 없으니 추진하게 된 거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가족하고 먹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며 얘기 듣고 대화하며 보내죠. 그래서 박 시장은 만날 밥만 먹고 다닌다는 소리도 듣는데, 아니 그 즐거운 시간을 왜 혼자 가서 밥을 먹어요?(웃음)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선택된 몇 명만의 전유물도 아니고요. 정치는 시민들의 삶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이 시장'이라고 선포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은 한 명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서로가 협력하고 협치하면서 집단지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가야 하는 것이죠.

Q 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이 정말 재밌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덩달아 즐겁습니다. 일을 재밌게 하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일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이전에 시민운동할 때, 참여연대나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공정무역 커



피 등등 많은 일들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될까 고민하면서 한 5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잘되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잘되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잘되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나, 재미있는 일이 끝없이 있는데 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웃음). 시장 직은 하도 일이 많아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라는 게, 그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꼭 기업인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법무사회에도 많은 과제가 있잖아요? 과제가 다 쉬운 건 아닌데 해결할 때가 보람차고 그러시잖아요. 뭔가 도전해서 성취하는 재미,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즐거움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其位)", 큰 덕을 쌓으면 자리는 저절로 오는 법!

Q 요즘 전문자격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공무원 채용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보는데, 서울시는 어떤가요?

이제는 공무원도 전문가 시대입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시대, 융복합 행정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등용이 필요하지요.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체 공무원의 절반을 전문가로 구성하려고 해요. 변호사·법무사·회계사·외국인 등 각 전문자격사의 영입을 점증적으로 늘려갈 겁니다.

서울시정 중에서도 특히 법률 행정의 전문성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 보호는 물론이고, 정책사업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거나 재정 절감 등 관리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지하철 9호선을 재구조화할 때, 변호사들의 전문성에 대해 제대로 가치를 지불하고 법률적인 처리를 하도록 맡겼더니 3조2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변호사와 회계사로 구성된 '계약심사단'이 법률조항을 꼼꼼히 검증하면서,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이나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지요.

우리 목표는 2020년까지 법률전문가 100명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13명이 채용돼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법률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Q 최근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그야말로 법무사의 전문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법무사의 참여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요?

좋은 제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 따라 인적 구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4급 이상 공무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인적 구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법무사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장 분쟁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이 많잖아요? '서울시 이웃분쟁해결센터'라고, 그런 지역 내 분쟁들을 상호 협의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곳이 곧 개소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한법무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사 세 분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호 협력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Q 오늘 시장님을 직접 뵈니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이시라 언론에서 보던 강성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이미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검사를 하다가 그만둘 때 대구의 한 한학자 분이 일필휘지로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오래전이라 지금은 그 글씨를 잃어버렸는데, 한 줄의 문장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덕(大德)이면 득기위(得其位)라", 큰 덕이 있으면 저절로 자리는 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일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 당도 없었고 무소속이었는데, 당시 큰 두 당의 후보를 꺾고 당선됐잖아요. 그 뒤로 재선할 때도 민주당 지지도가 낮았지만 압도적으로 당선됐고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 콘텐츠가 풍부하면 시민들은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법무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도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사님들께서 공익법무사단을 조직해 전통시장이나 창업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법률지원을 해주시게 되어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법무사님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많이 발굴해서 공익법무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법무사님들도 공익법무사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제안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우리 서울시 법치 시정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자긍심으로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



"

공익법무사단을 조직해
전통시장이나 창업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법률지원을 해주시게 되어
반갑고도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법무사들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많이 발굴해 공익법무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출생편
01

태아도 권리가 있을까요?

태아의 출생시기와 권리능력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녀의 출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아이는 출생을 통해 법률적인 권리의 주체가 되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법률적인 권리가 인정될까요? 태아를 둘러싼 법률 문제에 대해 재미있는 Q&A 등을 곁들여 알아봅니다. 〈편집부〉

1. 태아는 언제 사람으로 인정받나요?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 즉 출생시기에 대한 판단기준은 「민법」, 「형법」 등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민법」에서는 판례에 따라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보고 있는 반면, 「형법」에서는 분만이 개시된 때를 출생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① 「민법」에서의 출생시기 –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민법」에서 사람의 출생시기는 사람으로서 법적인 권리능력이 취득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출생시기는 태아의 상속인 적격 여부 판단과 연령·성년기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출생신고기간의 가산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상태로 출생해야 하며, 판례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3.15.선고 2006나56833판결).

② 「형법」에서의 출생시기 – "분만이 시작된 때"

「형법」에서는 사람의 출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낙태죄와 살인죄가 구분되는 기준이 됩니다. 출생시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은 없지만, 제251조에서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만 중의 태아는 이미 출생해서 사람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의 출생시기에 대해 판례에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29.선고 2005도3832판결, 대법원 1982.10.12. 선고 81도2621판결).



2.
태아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_ 태아의 6가지 권리능력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아에게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 유류분, 유증, 인지 및 유족연급 수급 등에 있어서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태아도 불법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판례에서는 부(父)의 부상·사망으로 인한 태아의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대법원 1993.4.27.선고 93다4663판결, 대법원 1962.3.15. 선고 4294민상903판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아직 뱃속의 태아라도 자녀로서 '인지'될 수 있어요!

인지는 혼인 외에서 출생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법률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에서는 태아에게도 인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 부(父)는 포태(胞胎)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858조).



Q 임신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조산되어 결국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5개월의 A씨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승용차에 의한 충돌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태아를 조산하고 결국 태아는 사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승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운전자를 상대로 자신과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태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모뿐 아니라 태아도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8.3.5.선고 67다2869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태아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상속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4 태아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 몫을 말합니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이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해 보호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도 이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Q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아내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A씨는 임신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이후 태어날 아이가 결손가정에서 자랄 것이 걱정되어 낙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 B씨는 사망한 아들의 혈육을 낙태한 며느리 A씨는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낙태는 '상속인을 살해'한 '상속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권리능력이 있어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낙태행위는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의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A씨는 사망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으나, 위 상속인의 결격사유 중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A씨가 남편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되어 한 행위일 뿐, 낙태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상속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자신의 태아를 낙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상속결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판결).

한편, 대법원이 A씨의 낙태행위가 상속결격 사유로서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A씨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형법」에서는 아직 분만되지 않은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낙태죄는 적용될 수 있으나 살인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5 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어요!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아도 이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1064조).

6 태아도 연금이나 보상금 수급권이 있어요!

태아는 다음의 연금이나 보상금 중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 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권리가 보장됩니다.

✓ 태아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및 보상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동 규칙」 제4조제2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동 법률」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동 법」 제18조제2항)

3. 태아는 "살아서 태어나야만" 권리가 인정돼요! –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판례에 따르면, 태아의 6가지 권리 능력은 살아서 출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태아가 의료사고를 입어 장애를 가지고 출생했다고 하면, 비록 장애를 입었지만 살아서 출생했으므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같은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태아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교통사고로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는데, 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임신 8개월의 임신부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운전기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과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A 사망해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민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태아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판결).

즉, 태아라고 해서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출생해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 태아의 아버지는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 성 고지 금지는 위헌", 한 예비아빠의 헌법소원 이야기

예전에는 태아의 성 고지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임신 8개월부터는 의사로부터 태아의 성별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다. 법이 이렇게 바뀐 데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었던 한 예비 아빠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2005년, 2세 출산을 한 달 앞둔 예비 아빠 정재웅 씨는 아내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에 대해 물었으나 불법이라며 거부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답답한 마음에 "태아의 성 고지를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였던 정씨는 당시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고, 행복추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헌재 2008.7.31. 2004 헌마1010, 2005헌바90).

헌재의 당시 결정에 따라 정부는 임신 8개월 이상 된 태아에 한해 성 고지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2009년 12월 31일 현행 「의료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4.
태아는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태아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와 진료 중 알게 된 태아의 성을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태아 성 감별은 금지, 성 고지는 임신 8개월부터 허용!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성 감별에 관련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만약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또한,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나 임부를 진찰,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2항). 만일 이를 위반해 태아의 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역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제3항).

2 인공임신중절수술은 금지, 강간 등의 경우에는 허용!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만일 허용되는 사유 외 사유로 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에 동의한 부녀, 수술을 시행한 의사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법무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연골 무형성증, 낭성섬유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②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본인의 동의만 받을 것.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나 후견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것.

③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일 것.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실

Q 경매 중인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체납세금이 많은데, 1순위 저당권자인 제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

2013년 5월경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지인이 그 부동산을 1억 8천에 처분하면서,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이니 자신이 받게 되는 돈 6천만 원만 우선 받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받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이 딱한 것 같아 우선 6천만 원을 변제받고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알고 보니 매수인은 부동산 매수 전부터 세금 체납액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금체납은 우선 배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비해 턱없이 많은 세금으로 인해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A 부동산 매수인의 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귀하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귀하께서 질문하신 세금과의 우선순위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2004다51153)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계약 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아무쪼록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잘 진행되어, 손해를 입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법무사

성희원 법무사(경남회)



민사

Q 빚을 진 채 사망한 어머니가 보험금을 남겼지만 빚 탕감은 안 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꽤 많은 빚이 있고, 한편으로 소액의 생명보험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탕감하려고 했지만, 금액이 모자랍니다. 법원에서 어머니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했다고 서류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보험금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되어 어머니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법」(제1019조, 제1028조)에는 부모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모두 떠안게 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을 받지 않기 위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모가 남긴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어머니가 남긴 빚에서 적절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남긴 생명보험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2003다29463)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어머니의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와 같이 확정되므로, 일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에서 언급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실

Q 주택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일부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 세금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민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와 그 지상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 중개사와 함께 확실한 주택인 것을 현황 확인했고, 중개사도 주택으로 확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 날짜를 기다리던 중 주택 중 일부가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 대장상에 '사무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 부분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1.3%가 아니라 4.6%인 상가세율이 적용되어 처음 예상한 취득세 등 총 합계금의 3배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중개사의 책임을 물어 매도인이 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협조를 얻으십시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은 현재 주택 부분에 대한 세율은 1.3%(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의 합), 사무실(상가) 부분에 대한 세율은 4.6%(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율의 합)로, 취득대상 물건이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인 줄 알고 매매계약을 한 귀하의 경우로서는 계약금을 반환 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인 귀하에게는 비록 중개사로부터 안내를 받아 실제 현황이 주택임을 확인했다 해도 공부상의 기재, 즉 등기부와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를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는 반면, 매도인에게 법정해제의 사유('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했으므로 중개사의 책임을 물어 그로 하여금 매도인의 협조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고, 그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의 용도, 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매도인에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이 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하고(이때, 주의할 점은 용도변경 날짜를 매매계약 이전 날짜로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에는 매도인과 용도변경 후 날짜로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원하는 대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

최승리 법무사(강원회)



Q 전세권등기를 한 친구가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데 괜찮을까요?

민사

전세권 등기를 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권을 담보로 잡는 방법과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못할 때 회수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A 전세권 담보 대여금은 전세기간 만료일에 따라 그 회수방법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권을 담보로 잡으려면, 전세권에 근저당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에 대해 근저당권등기를 할 때, 집주인의 서류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후 돈을 빌려주기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 전세권자가 차용한 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차용금의 변제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가 근저당 설정등기를 할 날짜와 같거나 그 전인 경우라면 집주인은 받을 차용금을 제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담보로 빌려준 돈의 회수는 대여금 변제일이 전세권의 전세기간(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음)이 만료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그 회수방법이 달라집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에는 부동산경매와 똑같이 전세권에 대한 경매를 실행해 낙찰되면 법원의 배당을 받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 받은 사람은 전세권을 양도받아 전세권 만료 시까지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하다가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등기부상에 전세권 근저당권이 기록돼 있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 근저당권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를 준비해 집주인이 반환해줘야 하는 전세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해야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주인이 전세권자로부터 상계할 금원이 있다면 그 금원을 전세금에서 제하게 되므로 일부승소일 가능성이 있으며, 집주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다 해도 집주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전세기간을 확인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집주인과 연락해서 모든 위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지민 『법률신문』 기자

최신 생활 관련 판례, 알아두면 힘이 됩니다!



"착오송금 대출금 알고 쓴 거냐?" 검사 질문에 "맞다" 답변, 횡령혐의 기소

의정부중앙지법 2014노2984판결 **어느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불분명한 복합질문, 자백 인정 안 돼!**

A씨는 2013년 7월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B카드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전산 착오로 이중 송금되어 계좌에는 2,400여만 원이 입금됐다. A씨는 이 돈을 두 달에 걸쳐 딸의 수술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검찰 조사 당시 A씨가 "2013년 9월 전에 B카드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개 이상의 질문이 하나의 질문으로 결합된 '복합질문'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아 어떤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여부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피의자나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질문과 답변이 이뤄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자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질문은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과 '카드사가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고도 그 금액을 다 쓴 것이죠?'라는 질문이 결합된 복합질문이기 때문에 A씨가 어느 질문에 맞다고 답변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A씨가 질문을 받기 전후로 '9월이 되기 전에 돈을 다 썼다', '떼어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하고 딸 수술비로 썼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진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A씨의 '맞다'는 대답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 거짓말에 속아 보험갱신금 건네, 보험회사 상대로 손배소송!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88244판결 **설계사는 독립보험대리점 소속,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 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로 믿고 지내던 터라 A씨는 의심하지 않고 C보험사에 들어둔 다른 보험 등을 해지해 돈을 마련한 뒤 B씨에게 줬다.

하지만 B씨의 말은 거짓이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는 물론 C보험사를 상대로도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C보험사의 전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독립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 소속 설계사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C보험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A씨와 B씨 두 사람의 개인적 금전거래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달려든 진돗개 때문에 폭행당한 개주인, 피해배상소송

춘천지법 2015나1847판결 **목줄 제대로 안 잡은 개주인 과실 있어, 가해자 50% 배상책임!**

A씨는 2014년 5월, 속초시의 한 호수 근처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했다. 그런데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개가 갑자기 같은 곳을 산책하던 B씨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화가 나 개를 발로 차려고 했으나 A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B씨는 치료비의 절반인 2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 등 7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개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B씨 자녀에게 달려든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A씨의 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B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남향'인 줄 알고 비싸게 산 아파트가 '북동향',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소송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8886판결 **남향이 아닌 사실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 있어, 본인도 40% 책임!**

남향 아파트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고가에 아파트를 샀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얼마나 져야 할까.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이모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아파트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이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 준 아파트를 10억 원에 사들였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5천만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5천만 원이 더 비싼 것도 감수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뒤에서야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 체결 전에 집을 구경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북동향인 줄 몰랐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이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을 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며 "이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설명했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씨가 매매계약 체결 전 동일한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계약 체결 전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사료 하역 노동자, 요양 신청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에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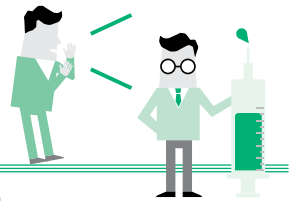
서울고등법원 2015누53772판결 **업무와 디스크 사이 인과관계 상당, 원고 승소 판결!**

2004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일하던 이모씨는 매일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오는 사료를 창고와 차량 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다. 2011년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씨는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10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라며 거부했고,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최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한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1,606개의 사료를 생산하는데 이를 옮길 자동화 설비시스템이 없어 이씨 등 2명이 매일 직접 손으로 20kg의 사료를 옮겼다"면서 "사료 운반 업무 대부분이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하게 돼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디스크와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디스크 진단 당시 만 46세로 이미 퇴행성 질환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업무가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에 의해 강제입원 한 정신질환자, "내보내 달라" 인신보호신청!

서울중앙지법 2016인1판결 부모가 동의해도 본인동의 등 없는 강제이송은 위법, 수용해제명령!

정신질환 증상으로 부모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30대 남성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입원하게 됐으니 내보내 달라"며 낸 인신보호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퇴원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과 의료기관장의 허가가 없었다면 위법하다는 취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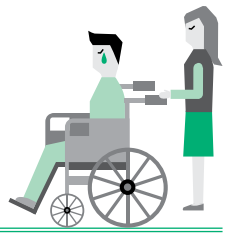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모(39)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신보호신청사건에서 최근 "병원은 이씨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1월, 이씨의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의료진의 말에 응급업체에 연락해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 직원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씨를 결박하고 A대학병원으로 옮겼다. 이씨를 대면 진찰한 의사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입원됐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정 판사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이씨를 즉시 퇴원시키라"고 결정했다. 부모가 동의해도 본인의 동의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강제로 이송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정 판사는 "이씨의 부모가 이씨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결박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를 대면해 진찰하고 입원 결정을 하기 전에 이뤄졌다"며 "이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디스크 요양급여 신청한 수로원, 일부 염좌 증상만 인정받자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2308판결 허리 부담 과도하지 않아 디스크와 업무 관련성 30%, 원고 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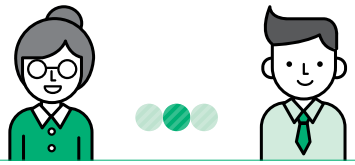
2006년부터 포천시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윤모씨는 2013년 11월 "7년 동안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해 디스크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윤씨는 "매년 3~7월에는 한 달에 3~4회 정도 25kg 무게의 포대를 날라 도로에 붓는 록하드 작업을, 7~10월에는 한 달에 10일 정도 마대를 쌓는 수해복구 작업 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요추부 염좌 증상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허리 디스크는 불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윤씨는 공단을 상대로 최초요양상병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윤씨가 이미 어느 정도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됐고 "디스크 발병에 업무가 기여한 정도가 30% 정도에 불과하므로 윤씨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비롯한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사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50% 인상”되었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2016.4.1.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2005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법령이 시행되면서 보상한도가 50%(대인배상의 경우) 인상되어 사고 피해자들의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행 피해자 1명당 1억 원인 보상한도가 1억5천만 원으로 인상되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리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 1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외국인관광객 쌍꺼풀 수술 등 성형비용, 부가가치세 환급해 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3」 개정 (2016.4.1. 시행)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제109조의3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한시적으로 1년간 실시된다.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의료용역에는 쌍거풀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이며,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환급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운영사업자는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대주주 친족의 범위가 축소돼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6.4.1.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의 제157조 제4항이 시행되면서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된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시행으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해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제외된다.



아파트 발코니 방화문, '열기차단 기능'도 설치해야 해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4.7. 시행)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4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에는 화재 시 대피시간을 벌어주고 불이 옮겨 붙는 것을 지연·차단하기 위해 대피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방화문은 화염은 차단할 수 있으나(차염성), 열을 차단하는 성능(차열성)은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에는 화염뿐 아니라 그 열기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화염은 1시간 이상, 열은 30분 이상 차단해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60℃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박물관·미술관 설립하려면, 소방시설 갖추어야만 해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6.4.7. 시행)

지난 4월 7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박물관과 미술관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화재와 도난방지시설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소화설비, 피난설비,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람객의 피난을 유도하는 안내 정보를 부착해야 한다.



건물 주차공간(필로티 구조)도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 써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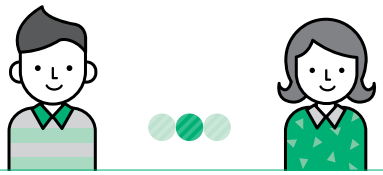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016.4.8. 시행)

건축에 있어 필로티 구조는 건축물 하단부 기둥을 제외하고는 텅 비게 하는 구조로, 주로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필로티 구조의 마감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부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필로티' 구조에서 바깥 공기(외기)에 노출되는 천장과 벽체도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필로티 구조에서 발생한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대형화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전과 있는 사람은 장교·부사관에 임용할 수 없어요!

「군인사법」 개정 (2016.4.20. 시행)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군인사법」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성폭력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그로 인한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



입법예고, 이제 '통합시스템'에서 한눈에 일괄해 보세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016.4.21. 시행)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되는 법령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주로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한정되어 불편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개설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별로 실시되는 모든 입법예고를 통합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시스템을 통해 개정 법령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에게도 메일이 발송되어 편리하다.

이번 시스템의 개설로 국민들이 정부의 모든 입법예고를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정부와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단 한 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돼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2016.4.28. 시행)

건설, 전기, 전자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경우 1회 대여 시 3년간 자격을 정지하고, 2회 이상 대여한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부터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 시행되어, 앞으로는 단 한 차례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함께 처벌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수급금의 5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해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16.4.29. 시행)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를 효율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4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 사업은 존속기간이 최대 3년으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일단 도입된 보조사업은 축소·폐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급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그 폐지가 원활해지게 된다. 다만, 존속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재평가된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 가능하다.

또, 보조사업자나 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부정 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받게 된다. 법무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1

법무사, 왜 부동산거래 현장에 있어야 하는가?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전국여성법무사회 부회장

국토부와 대법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시장 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난에서는 법무사들의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실천의지, 실천방법 등 실천과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법무사 역할의 중요성

필자는 이제 10년차에 접어든 법무사로서 그동안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면서 접했던 몇 가지 사례와 경험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업계에는 필자보다 더 오래된 연륜과 깊이 있는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외람되지 않을까 하는 주저함이 있었지만, 필자는 전국여성법무사회의 임원으로서 2015년 3월 전국여성법무사회 총회에서 본인확인 실천 결의를 한 후 1년 남짓한 동안 실제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해보며 또 다르게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 이전의 경험과 함께 새롭게 깨달은 바들을 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사례 1〉 부동산거래 신고에서의 법무사

당사자들이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업무를 맡기러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온 경우, 종종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거래신고기간이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당액 부과된다.

한 의뢰인이 셀프등기를 하려고 열심히 알아봐서 계약부터 등기까지 직접 했지만, 부동산거래신고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고생해 아낀 비용보다 몇 배가 부과되었다며 하소연했다.

만약 그 의뢰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등기업무를 맡겼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부동산거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즉시 이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계약토록 권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사례 2〉 법무사의 에스크로 업무

평소 업무를 자주 맡기는 회사의 임원이 매매를 하고 싶다며 부동산등기업무를 의뢰하러 왔다. 상가건물이라 하여 집합건물이겠지 하고 등기부를 보니 건물과 토지등기부가 따로 되어 있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말로만 듣던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의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은 건물등기부만 가지고 왔다. 토지등기부의 지분도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명의인 과다로 등기부의 인터넷 열람이 되지 않았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고, 매수인은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다음 날 해외에 나갈 일정이 있어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하여 양 당사자는 수억 원의 잔금을 법무사에게 맡기기로 합의했다. 잔금을 맡은 필자는 다음 날 등기부를 확인해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런 사례에서 만일 법무사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과연 법무사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라면 몇 억 원의 거금을 선뜻 맡길 수 있었을까? '법무사'라는 전문자격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거래의 불편을 해소하고, 순조롭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례 3〉 부동산등기부 확인절차에서의 법무사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이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의 종류에 따라 누구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탁자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음에도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그런 문제에 처한 임차인이 찾아왔다.

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리·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수령한 위탁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임대차계약 당시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오래한 미혼여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전 재산이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번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위탁자에게 재산이 있어 보증금의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는 돌려받지 못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사례 4〉 부동산등기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

초보 법무사였을 때다. 한 의뢰인이 안산에 있는 꽤 넓은 면적의 토지를 증여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를 보니 소유자가 학교법인이었다. 순간 학교법인은 매매나 증여 등의 처분 시에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수험 지식이 스쳐 갔다.

수증자는 개인이었는데 100% 그대로를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필자가 "이 토지는 관할청의 허가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니 증여인은 크게 당황했고, 수증인은 사기를 당했다는 표정이 되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살벌해진 채로 이내 사라졌다.

이후 안산법원에 갈 일이 있어 들은 바로는 그 토지로 증여등기가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등기관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토지로, 그때마다 등기관들이 '허가서 미첨'으로 각하했다는 것이다. 이미 소문이 퍼진 안산을 떠나 먼 거리에 있는 서울의 법무사를 찾아온 게 아닐까 싶다.

당시 별 이상 없다고 오케이를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수증인은 증여인에게 모종의 대가를 지급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 등기가 각하되었을 때 법무사에게 그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크다.
> 등기부 확인, 서류 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임대차 문제 등을
> 신속하게 점검하고 처리할 수 있다. 법무사가 서류 확인이 다 되었음을 확인해주고,
> 후속절차의 진행을 안내하는 등 거래 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1.9.29.선고 2010다5892 판결】에서는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 난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가 그곳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위 부동산이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의뢰인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무사는 의뢰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이 판례에서처럼 법무사는 부동산의 용도와 소유자의 법적 성격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엄밀하게 확인해 주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사례 5〉 본인확인 절차에서의 법무사 ❶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이 등기업무를 요청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로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에게 증여 이전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이어서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등기이전을 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 했더니 한숨을 쉬며 이복동생이 외국에 살고 있어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돌았고, 어머니가 홀로 일하며 힘겹게 집을 장만했는데, 혹시라도 가정에 마음을 붙일까 해서 아버지 명의로 해놓은 집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등기하려면 이복동생의 서류도 받아야 할 텐데, 동생에게 서류를 받기가 어려우니 세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생전에 증여로 어머니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듣고 보니 딱한 사정이라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뵈러 집으로 찾아갔다. 몸은 쇠약했지만 정신은 아직 또렷해서 이 집을 어머니에게 넘기겠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명의만 자기 것이었지 실제로는 부인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서류를 받아와 등기이전을 했다. 몇 달 후 그 지인이 찾아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다며 집에까지 찾아와 등기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

가족 간의 증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등기를 해야 하지만, 사실관계가 특별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에 의거해 등기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 아닐까.

〈사례 6〉 본인확인 절차에서의 법무사 ❷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가깝고도 먼 것이 부부 사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몇 번의 경험을 거치다 보니 이제는 부인이 남편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오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부동산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한다.

몇 번의 경험 중 가장 황당했던 경우는 부부 사기단이었다. 부인에게는 자기 명의의 거액의 부동산이 있었다. 남편이 부인의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부인은 얼마 후 남편을 형사고발하고, 남편과 업무 처리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반복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자기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대출 절차가 허술한 기관을 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부사기단에 걸려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본인확인 절차는 법무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2. 본인확인 현장에서의 법무사 개입의 중요성

필자는 법인등기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의 성격상 부동산등기도 사무실에 찾아오는 고객을 위주로 하는 편이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본인확인 실천을 결의한 이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노력해 왔다.

이전에는 매매계약서를 미리 받아보고 등기부를 확인하면, 서류를 받아오는 일은 직원에게 맡기곤 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았다.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 명함을 주면 대부분은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개사 10년 만에 법무사 본직은 거의 처음 본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거래 업무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만 하기 때문에 중개사 사무소에서 은행거래 법무사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 또한 은행근저당설정등기 업무를 위해 법무사 본직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가장 많은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법무사 본직의 존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2006년,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때였다. 계약한지 한 달 만에 잔금일자가 되었는데 부동산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자 매도인은 계약 가격이 아니라 오른 시세대로 팔고 싶었던지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당연히 매수인은 집을 계약가대로 구매하길 원했다. 그에게는 특별한 귀책사유도 없었다.

이해관계가 달랐던 두 사람은 중개사 사무실에서 몇 시간에 걸쳐 실랑이를 벌였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자발적으로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가? 계약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계속되는 질문에 현장에 없었던 법무사는 직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답변을 하느라 진땀을 뺐다.

당시 법무사가 현장에 있었다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 즉각 대처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으로 두 사람의 소모적인 실랑이를 멈추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꼭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 현장에서 법무사의 역할은 크다. 등기부 확인, 서류 확인,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임대차 문제 등등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처리할 수 있다. 법무사가 서류 확인이 다 되었음을 확인해주고, 후속절차의 진행을 안내하는 등 부동산 거래 현장을 주도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법무사가 되었다고 하니 한 친구가 "법무사? 예전에 집 살 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다면서 도장만 받고 금방 가던 사람?"이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 국민들에게 법무사는 (아마 사무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됨) 잠깐 스쳐가는 사람으로밖에 기억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거래가 가장 생생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며, 법무사가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거래 안전을 위해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왔던 많은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다수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될 것이다. 법무사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실천과 전략 2

‘등기원인증서’에 ‘본인확인 표시’를 하자!



정정훈
법무사(경기중앙회 안양 부지부장)

국토부와 대법원의 부동산거래 선진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시장 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 입법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난에서는 법무사들의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실천의지, 실천방법 등 실천과 전략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_ 등기선진화 세 가지 방안과 본인확인 실천방안의 제안

최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등기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한 등기선진화 방안에 관한 논의들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등기선진화 방안으로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등기원인증서에 공증을 받는 방법, 본직 본인확인방법의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무사업계로서는 이 세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직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법무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도 깊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본인확인을 실천해 온 경험에 기초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본직 본인확인의 방법으로서 “등기 원인증서(매매계약서)에 본직이 확인했음을 표시”하는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필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국토부의 통합시스템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가 무의하다고 생각되므로 논외로 한다. 또한, 이 글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안임을 미리 알려드린다.

2. 등기선진화 및 본인확인 방법을 둘러싼 논의들

가. 「부동산등기법」 개정입법 전망에 근거한 접근 방법

「부동산등기법」 입법에 따라 마련될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그동안 제안된 시안들은 '확인서면(본인여부확인서)'을 한 번 더 작성하는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방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본인확인을 한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사들끼리 아무리 노력하고 법무사가 직접 신청인들을 충실히 확인한다 해도 일반 국민들 또는 법원 등에서 법무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는 본인확인 실행시기도 「부동산등기법」에 본직 본인확인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본직 본인확인이 「법무사법」에만 규정될 경우, 변호사들을 규제할 명백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동일한 등기업무를 하면서도 법무사만 실천하는 꼴이 되어 사무장들이나 직원들이 등기업무가 좀 더 편한 변호사 사무소로 대거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함정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① 대법원이 어차피 본직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등기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② 결국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기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그럴까?

문제는 대법원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의 본인확인 개정은 법무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결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결국 대법원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이고, 이 방안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이 본직 본인확인을 가장 적합한 등기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입법을 추진한다 해도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회의원과 변호사업계의 주류 변호사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은행을 쫓아다니며 본인확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부동산등기법」에서의 본직 본인확인제도 입법화란, 한창 진출 중인 등기시장을 법무사에게 송두리째 빼앗기는 꼴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등기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변호사협회와 국회가 호의를 가지고 있는 공증의 방법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본인확인제도나 공증방안을 모두 포기하고, 국토부의 방안(원스톱서비스)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추측도 물론 숨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기대처럼 대법원이 원인서면에 공증을 받는 방법을 등기선진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나. 「부동산등기법」 입법 후, 부동산등기의 법무사 독점 가능성

어떤 이유에서든 본직 본인확인 방안을 반대하는 변호사업계의 주류적인 시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이전에는 등한시했던 부동산 등기시장이 특히 변호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좋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

기존에도 변호사 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등기업무가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피상적인 생각이다. 왜냐하면 등기업무의 핵심은 등기신청인과 신청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사 119년 역사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처리한 업무가 바로 '본인확인'이라 할 수 있고, 법무사는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이기 전에 '본인확인의 전문가'다.

물론 법무사업계에서도 등기업무를 직원이 전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가 직

접 등기절차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영화 「변호인」에도 등장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는 등기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사무실 운영에 도움을 받고자 궁여지책으로 월 100만~200만 원 정도 받고 법무사 사무장들을 등기 팀으로 들이지만, 등기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본직 본인확인은 변호사들에게도 이익이다. 법무사는 물론이고 변호사도 전문가로서 직접 잔금 현장 등에 출석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부실등기의 비율을 줄여간다면 기존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시장을 안정화하고, 법무사와 변호사업계가 모두 이득을 보게 되며, 종국에 그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등기선진화 방안이 등기 원인서면에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숨어 있다. 등기선진화 방안도 구조조정의 일종(모든 전산화는 반드시 등기소 내부의 인력 감축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이라고 봤을 때,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이 바로 인력감축이다. 공증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다.

등기시장을 공증에 맡긴다면 이미 일거리가 많은 일부 공증사무실은 더욱 바빠지고, 법무사와 잠재적인 등기전문 변호사들의 일감은 없어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이는 등기(잔금)의 역동성과 변화무쌍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잔금지급 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을 받는 일은 중요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므로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등기시장을 공증에 맡긴다면, 공증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본인과 대리인을 확인하는 게 전부일 것이다.

이래서는 등기의 역동성을 충족시키는 일처리가 불가능하다. 가장 좋은 구조조정은 기존에 있는 제도와 인력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임을 대법원과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본인확인에 관한 새로운 제안 _ '원인증서에 본인확인 표시'

대법원은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격자 대리인이 직접 국민을 상대하고 재산권의 변동 및 이에 따르는 법률효과 등을 설명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업무의 현장감각을 가진 법무사들이 대법원이 「부동산등기법」에 본인확인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하고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이러한 법무사의 실천력이 「부동산등기법」 입법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자 대리인 본인확인 등에 관한 규칙」 시안

제6조 (본인확인 기록 방법 및 보관)

❶ 본인확인을 한 회원은 등기 원인서류에 자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에 등기 원인서류의 사본과 제7조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편철한 후에 위임인 등의 연락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권리에 관한 등기를 위임 받은 회원은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을 마친 후에는 등기 원인서류 말미나 뒷면에 "법무사000은 본인을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위 제1호의 옆에는 회원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3. 위 제2호의 옆에는 등기의무자인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위 제3호의 옆에는 등기권리자인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위 각호의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다.

회원의 본인확인기록	회원의 자필, 서명	권리자 자필, 서명	의무자 자필, 서명
법무사 정정훈은 본인을 확인함	정정훈 (사인)	이권리 (사인)	김의무 (사인)

이에 필자는 그 일환으로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기반하여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등에 대한 규칙」 시안(전체 시안 중에서 본인확인을 규정한 6조만 인용함)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필자가 이러한 시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대법원에서 노력한다 해도 법무사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동산등기법」 개정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의 의무를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사실에 규범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법무사들의 전자등기 사용률이 저조한 이유도 법무사 사무소 직원들이 본인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전자등기 실행 비율을 높이기란 요원하다.

법무사가 중개사사무소 등에 직접 출석해 본인을 확인했다(계약서의 진정성립 의사를 확인했다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임)는 자필기재를 **"원인서면에 기록"**하고, 법무사가 자필서명을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본직의 본인확인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고, 사무원들이 현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게 되어 전자등기의 실행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법무사도 여러 이유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원인서면 작성 시나 잔금 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그 현장에 없을 수도 있으므로 위 규칙시안에서 '제6조의 제2항'을 마련했다.

이 경우 등기신청 후에는 본직만이 등기소에 출석해 보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본직의 본인확인에 대한 추후 보정만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임). 이때에도 본직은 위임인 등에게 반드시 전화 연락의 방법 등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협회는 이러한 제도가 회원들에게 압박이나 규제로 다가가지 않도록 「부동산등기법」에 입법되거나 현실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독려와 홍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❷ 회원의 사정으로 위 제1항 각 호의 기록을 등기신청 전에 하지 못하고, 등기 접수 후에 보완(보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제5조 제1항 단서의 방법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소에는 회원이 직접 출석하여서 위 제1항 각 호의 기재 중에 회원의 본인확인기록 및 회원의 자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본인확인기록에 국한한 것임).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회원의 직원이 위임인 등의 자필, 서명은 미리 받을 수 있다.

❸ 협회와 각 지방회 및 각 지부는 위 제1항 각호에 회원의 자필기재 및 자필서명을 등록한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의 비치는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❹ 회원은 위 제1항의 사본과 제7조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과 위임인 등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함께 편철한 후에 사무종료인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맺으며

필자는 평범한 생계형 법무사인데, 본인확인의무가 제도화되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4월 21일, 협회 회장회 회의에 참석해 위와 같은 제도의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회장님들이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해 주어 먹구름이 걷히는 듯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시기다. 그리고 실행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119년 서민들의 법익실현에 기여해온 법무사제도가 120년 역사를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사도 "CEO조합장, 추진위원장" 된다!



전연규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앞으로 법무사도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추진위원장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법무사'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CEO조합장'으로 불리는 전문조합관리인은 지난 1월 27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법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대상에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 '법무사'가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 법이 공포되자 법무사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전 과정에서 법무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후속 시행령에서 '법무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분야를 주요업무로 하는 법무사들과 대응책을 모색,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가 명시된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그 외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도 별도 정리해 본다.

2. 정비사업에서 법무사의 역할

부동산개발에는 신(新)개발과 재(再)개발의 기법이 있다. 신개발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 대표적이다. 「도시개발법」은 1970년대 강남·서초·송파 개발에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수용방식이 추가되어 그 외연이 확대된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환지 방식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성격상 사업 진행의 장기성으로 인해 1980년대 강남의 개포단지나 분당·평촌 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사업 당시에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수용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신개발 기법이었다.

이러한 신개발의 토대에 구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으로 건설을 촉진(?)하여 만들어진 아파트와 기존의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기성 시가지 내에서 행해진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신개발과 재개발의 교차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광의의 재개발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법무사는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 등의 하위 규정, 조합정관(안), 사업 진행에 따른 등기나 보전처분 외에도 법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산, 청산 단계까지 정비조합과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법무사다.

3. 「도시정비법」 개정의 문제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하는 사업 주체는 정비조합이다. 정비조합은 먼저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총회를 개최한 후에야 만들 수 있다. 서초나 강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10년 이상 공석이 되었거나 별도 경선 없이 그 직을 누리기도 하였다. 지금도 종신조합장이 여러 곳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상존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중심은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이다. 왜냐하면 조합장의 경우 궐위가 되면 연장자인 이사, 감사가 그 뒤를 잇거나 직무대행자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법원에서 주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해서 대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같은 법조인인 법무사는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 지난 1월 27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위원장이 사임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일명 'CEO조합장')으로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조합장, 이사, 감사가 6개월 이상 궐위된 경우에는 이들의 대행자로서 변호사 등을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조합관리인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⑥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6.1.27.〉

제21조(조합의 임원) ⑥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⑦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업무집행, 선정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부칙 〈법률 제13912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대부분 법률에서 그렇듯 개정 법률에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막상 시행령에서는 법무사의 역할이 제외되어 왔다. 그 때문인지 법원에서도 그 직무대행자로 변호사를 허가해 온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도시정비 분야 현장에서 법무사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도 마찬가지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4.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법무사' 명시

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필자를 비롯해 도시정비 분야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사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숙의해 왔다. 「도시정비법」에는 제외되었지만 시행령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대상에 '법무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17년 동안 도시정비 분야에 종사한 필자는 『도시정비법 해설』, 『도시개발법』 등 10여 권의 책을 발간하였지만, 우리 법무사의 지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점을 통감하면서 마침 전자등기 문제로 국토교통부와 채널이 있던 차에 국토교통부의 소관부서에 법무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종 결심을 얻어 입법예고안에 법무사가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뛴 결과, 드디어 지난 4월 19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법무사'가 명시되었다. 앞으로는 법무사도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는 당당히 CEO조합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향후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정에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법무사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33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건설회사에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74조의2의 교육을 9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③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1/5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한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및 조합원 의견 수렴의 세부적인 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④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조합관리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조합원 1/5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공채 출신의 유능한 법무사들이 각 분야별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되면, 향후 개발사업에서 젊고 유능한 법무사들이 적극 진출해 CEO조합장도 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앞으로 등기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 개발 분야에도 이러한 법률적인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그 외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주출입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은 6미터 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 등 규정(안 제13조의2 제5항, 제6항, 제7항 신설) :** 「도시공원법」 상 녹지, 「주택법」 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이내만 허용하는 등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을 정하고,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을 조합 총회 의결 후 정비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다.

◉ **기초지자체장의 동의서 검인 방법(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동의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검인을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동의서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검인 후, 연번을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다.

◉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법(안 제41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이거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분양전환임대를 허용하며, 분양전환임대로 활용 시 대지가격의 30~50% 지급토록 하였다.

◉ **국고보조 등을 지원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60조제2항 및 제62조제2항 신설) :**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00세대 이상 집단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역을 국고보조 등을 지원받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법무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

성매매계약,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는 동등한가?



서선진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업자, 건물 임대업자들이 심판 청구한 헌법소원은 7차례 있었으나, 이번처럼 성매매 여성 스스로가 직접 나서서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하겠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단순히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를 넘어,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공론화된 대중의 시각과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또한 의미가 크다. 이 글에서는 법률가로서 이번 심판에 기초해 성매매에 관해 고찰해 볼 만한 몇 가지 법률적 관점에 대해 기술해 본다.

2. 위헌 심판의 주요 내용

가. 찬성 의견의 요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이 성매매 당사자(성 판매자와 성 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 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과 같은 기본권 제

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성매매 행위를 합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게 되면 성 산업으로의 거대자금의 유입,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등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의 성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나. 일부 위헌 의견의 요지

일부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하면서 성 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려면 형사처벌 대신,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을 인정하였다.

반면, 이것이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유해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며 강제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성 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달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전부 위헌 의견의 요지

전부 위헌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발적 성매매 그 자체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 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성매매에 관해 고찰해 볼 만한 몇 가지 법률적 관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수준에 따라 간통죄 위헌 결정이 그러했듯이 성매매 합헌 결정도 향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성매매'를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있다 하겠다.

가.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먼저 성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를 짚어보자. 계약자유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가 동등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규제입법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지위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에서 접근한 입법으로 볼 수 있다.

성매매계약 상황에서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성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는 대등한 관계일까? 임차인 지위의 열악성 때문에 법과 사회가 임차인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성 판매자 역시 입법적으로 보호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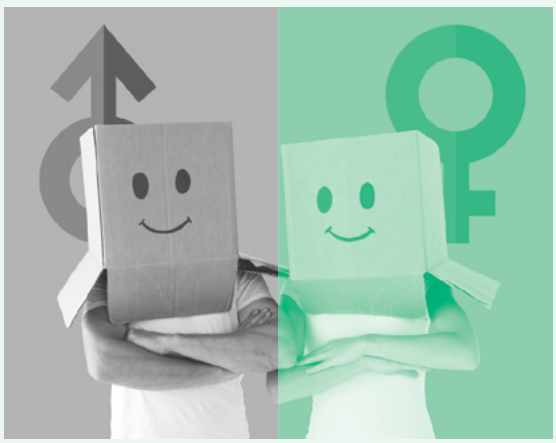
나. 성매매 대가 및 대상의 적절성

또 하나는 굳이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 풍속과 성 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라는 법적 권위의 큰 무게가 아니더라도 성매매는 민법에서의 '계약 대가성'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성 판매자는 성 구매자의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몸 전체와 그 이상의 것을 대가로 지급해야만 한다. 이때 성 구매자의 의무, 즉 지급하는 금전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그 금전을 받고 제공해야 할 성 판매자의 반대급부는 매수자에 의해 착취된 후에야 받은 돈이 대가적으로 적절한 범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성매매 여성은 항상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인 남성이 자신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하게 될지,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틀이 없는 백지상태에서 공포의 밀실에서 계약 당사자로서 채무가 이행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에 놓인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는가?

혹자는 시대가 좋아져서 성행위 수위나 방식 등에 따라 또는 상대 여성의 나이나 어떤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니 옛날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가격 체계로 정리되었다는 것만으로 '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사고 팔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었을까'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다.



이미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고, 더 이상 법률적 통제는 의미가 없으므로 차라리 합법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다수가 좋아한다는 것이 옳은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범법자의 수가 법률 준수자의 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 법을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수자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릴 수 없는 정의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법의 무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의 논리에 흔들리기보다는 진정 인간의 '성'이라는 것이 '매매'라는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조인 각자의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성 판매자의 자발성

마지막으로 성 판매가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에 기초한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성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본질은 진정한 '자발성'에 기초한 것일까? '자발'과 '비자발'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은 과연 그들 자신일까? 성매매 여성 스스로도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성매매 여성, 그 누구도 자발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매매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와 환경, 성매매 생활 이후에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구별된 '신분'적 낙인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자기정체성, 한편 그들을 신분적으로 격리하면서도 존재감을 부추기려는 사회의 모순적 취급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이라는 인식의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실은 비자발적으로 선

> 성매매계약 상황에서 과연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성 판매자와 구매자의 지위는 대등한 관계일까? 임차인 지위의 열악성 때문에 법과 사회가 임차인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주고자 하는 것처럼, 상대적 약자인 성 판매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법률적 견해를 제시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택되어진 자기정체성에 기초해 '자발'적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르지 않고 곧바로 인용하려 든다. 따라서 성 판매자 여성들이 말하는 '주관적' 자발은 결코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의 진의로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 자발로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맺으며 _ 법무사는 사회적 약자의 편

법률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고객들과 일하면서도 그들이 들고 온 계약서에서 부당성과 부적절성, 불법성이나 무효, 취소의 사유 등을 발견하고 법률적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성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를 써달라고 찾아왔다고 해 보자. 과연 얼마의 금액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위약벌을 정해줄 것인가? 또 어떻게 위약의 상황을 확인할 것인가?

성을 '매매한다'는 것이 생명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너무 흔해서 충격적이지도 않은데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느냐며 쉽게 사안을 덮어보려는 혹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아래 간단한 상황극을 한번 시연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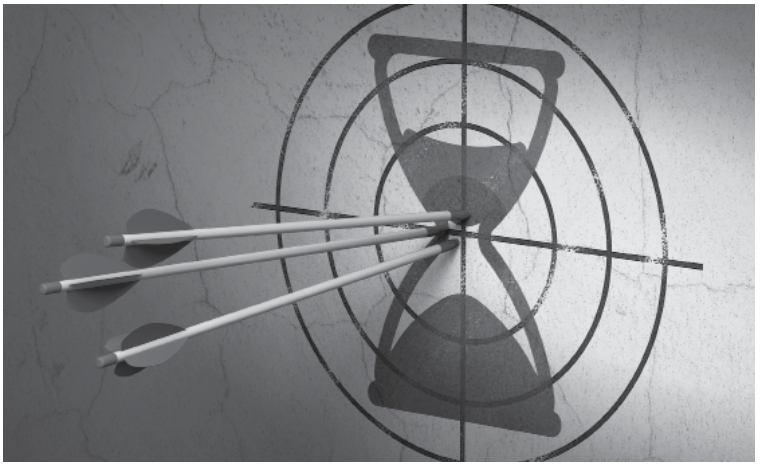
가족 중 일찍이 남달리 성에 대한 출중한 견문을 갖춘 여성이 있다. 그는 성매매 사업을 통해 20대 중반의 나이에 수십 억의 자산가가 되어 온 집안을 먹여 살리게 되었다. 자본주의사회의 합법화된 성 산업에 포섭되었으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한 자영업자로서 그의 계약이행(?) 능력을 자랑하며 그녀의 성매매 사업장에 손님몰이를 해 줄 수 있을까?

합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업을 그만두기보다는 돈 잘 버는 사업이라고 부추기며 손님이 끊이지 않아 나날이 번창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혹자는 성매매 여성이 '별천지에서 건너온 우리와는 다른 종족'이라고 은연 중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다.

필자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긴 세월 마찬가지의 착각 속에서 그들을 바라봐 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태어나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 누군가의 딸이고, 친구이며, 엄마임을 이제 모두가 직시했으면 한다.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계속해 왔다. 법무사로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내재된 소명의식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그 모든 논란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법무사가 편들어 주어야 할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이들 또한 자연스럽게 포함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성매매처벌법」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 또한 조금이라도 교정되기를 바란다. 법무사



협회 손해배상공제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2007년부터 공제사고 급증, 공제료 추가징수 불가피!



박용부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협회 공제사업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개최된 2015회계연도 제7회 공제사업위원회에서는 공제사업 개선 TF팀에서 제안한 공제사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결하고, 그중 공제료 추가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협회 공제사업의 현황과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징수 방안(균등징수 vs 차등징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 손해배상 공제의 근거 규정

우리 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및 제67조에 따라 법무사가 위임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손해배상공제회는 1998. 10.21.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사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 손해배상공제회에 가입하거나 혹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회 공제사업은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위임인'의 손해에 대한 법무사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 법무사가 입은 손해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제금의 지급액 한도(제11조)** : 회원 1인당 1년간 2억 원
- **공제회원이 납부할 공제료(제8조)** : 240만 원(공제금 한도액 2억 원의 1,000분의 12)

- **공제료 환급(제6조의 2)** : 공제회를 퇴회한 회원에게 3년이 경과한 후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씩 차감하여 환급
- **기금의 관리(제10조)**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 **지출한 공제금의 구상(제13조)** :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게 구상

2.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수입구조와 수지악화 현황

현재 공제사업의 수입원은 공제기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밖에 없다(공제회원은 240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지만 현행 제도상 그 공제료는 환급하므로 이를 공제기금의 수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납부 후 24년이 경과하면 환급금이 없음). 이러한 수입구조는 손해배상공제금 지급한도를 회원 1인당 3,000만 원(1991.1.1.~2003.9.30.)을 전제로 하여 설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수입구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2003.10.1.부터 공제금지급한도가 회원 1인당 2억 원(자격사들 중 최고액)으로 약 7배 상향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 공제사고가 급증하는 한편, 손해배상공제금의 고액화로 공제금의 지출이 매년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14회계연도에는 무려 29억 원이 넘는 공제금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지출된 공제금의 구상은 원활치 않아 2016.3.31. 현재 구상금 미수액은 92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에서는 위임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하고, 재산명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등 구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손해를 발생시킨 회원의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해 있어 구상이 어려움에 따라 현재 공제사업의 수지가 심각한 상황이다.

3. 공제 기금 고갈 가능성

위와 같이 공제사고 1건당 지급액의 고액화, 공제금 지급사건 증가로 공제기금의 지출은 대폭 증가하는데 반하여 지출된 공제금에 대한 구상은 어렵고 저금리로 인해 유일한 수입원인 정기예금 이자도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 공제료는 처음 240만 원을 납부하면 퇴회 시까지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제132회 이사회 결의, 2007.3.14. 개최), 퇴회 후에는 납부한 공제료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라 이자 수입만으로는 결코 현재 공제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아무런 해결방안 없이 이대로 공제회 운영이 지속된다면 2016.3.31. 현재

▶ **손해배상공제 구상금 미수 현황(2016. 3. 31. 현재)** 단위 : 원

회계연도	공제금 지급액	구상금 징구액	구상금 미수 누계액
2009	756,326,108	230,085,463	2,505,625,823
2010	1,417,136,213	568,318,340	3,354,443,696
2011	1,254,729,987	442,361,011	4,166,812,672
2012	1,348,518,490	360,999,461	5,154,331,701
2013	1,112,701,994	346,444,179	5,920,589,516
2014	2,762,327,269	467,549,676	8,215,367,109
2015	1,378,806,380	514,520,607	9,079,652,882

약 128억 원인 협회 공제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어 최악의 경우 공제회의 해산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4. 수지악화에 대한 대처방안

1) 「법무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

현행 「법무사법」 제26조에는 법무사가 법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적이기는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공포된 「법무사법」 개정 법률에서는 공제회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오는 8월 4일 이후부터는 구상금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무사법」 제26조(손해배상책임)

③ 법무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2016.2.3. 신설).

④ 지방법원장은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2016.2.3. 신설).

2)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구성, 공제사업 개선방안 마련

협회에서는 공제사업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장시간의 격론과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제사업위원회에 상정, 공제사고의 예방과 사후대책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결의하였다.

가. 손해배상공제 전담 법무사제도 신설

협회에 공제업무에 관하여 능력있는 전문 법무사를 채용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사고에 대한 소송수행과 구상권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사고 사례를 수집해 전국 법무사들에게 배포, 교육하게 함으로써 공제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나. 각 지방회에 '공제심사위원회' 신설

현행과 같이 협회에서 공제회를 운영하되 각 지방회에 '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회가 공제기금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소속 회원 중 공제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회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다.

다. 추가 공제료의 징수

공제사업의 수지 악화와 개선 대책의 한계로 인한 공제기금의 감소를 막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추가징수를 하지 않고서는 기금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공제료 징수방안이 논의된 바, ①공제제도의 기본은 전 회원이 동참하여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상부상조하는 제도이므로 전 회원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균등징수)과 ②공제금에 대한 관심과 업무 분담을 지방회에 분산시켜 공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와 구상금 징수를 원활히 함과 아울러 공제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도덕 불감증을 가진 일부 회원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이므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특정지방 및 일부회원에게만 추가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차등징수)이 제기되었다.

균등징수와 차등징수 방안에 대한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차후 결정키로 한 바,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는 바이다.

▶ **추가 공제료 2가지 징수 방안**

균등 징수	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에 대하여 전체회원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② 전체 회원에게 매년 일정금액(20만~30만 원)을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③ 「손해배상규정」 제6의2 제1항의 퇴회 회원에게 공제가입기간 1년당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
차등 징수	④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 회원들에게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 중 50%는 전체 회원이 균등하게 분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 균등하게 징수하는 방안 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회수된 공제금을 전체 회원 수에 따른 비율로 추가징수 금액의 기준을 정한 후, 미회수된 공제금이 있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는 기준보다 높은 비율(1.3~1.5)로, 미회수된 공제금이 없는 지방회 소속회원들에게는 기준보다 낮은 비율(0.5~0.8)로 징수하는 방안 ⑦ 사건당 일정금액(1건당 200~300원)을 징수하는 방안

5. 맺으며 : 손해배상 공제제도의 확장

손해배상 공제에서 위임인의 손해가 발생해 배상한 분야는 부동산등기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동산등기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법무사가 대부분의 부동산등기를 수행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손해배상공제제도는 부동산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로서, 일반 보험과 달리 과실뿐 아니라 고의에 의한 손해까지도 배상하고 있다. 법무사의 고의에 의해 발생된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이유는, 법원과 자격사제도를 신뢰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개개인에게는 '부의 결집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부동산등기신청 시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국가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부동산등기는 더 이상 법무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신청인별 등기사건 접수(촉탁 제외)를 보면 변호사의 부동산등기 신청이 14%를 넘고 있다. 손해배상공제제도가 도입될 시기와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증가한 숫자이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상승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위임인의 권리보장 방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만 부여되고 있다(「법무사법」 제26조 및 제67조).

따라서 손해배상공제제도의 취지와 현재 등기신청인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손해배상공제제도 등 자격자대리인의 규정은 법무사뿐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손해배상 공제가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발급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이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동일하게 준공증인적 지위[1]까지 부여했다면, 위임인의 손해배상방안도 동일하게 규율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등기신청권을 부여한 자격자대리인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 본직의 본인확인 의무강화 등 부동산등기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다.

1)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4295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협회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 개요와 전망

업계 IT혁신의 신화, "법무사 포털 사이트"가 뜬다!



이은정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지난 3월 31일 개최된 2015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 회의에서 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상훈)가 제출한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안'이 채택됨으로써, 협회는 '협회-지방회-회원-국민'을 상호 연결하는 업무통합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시스템 설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필자로부터 앞으로 구축될 업무전산화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2015년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회무 및 법무사업무의 통합전산화 사업이다.

그간 업무전산화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가 매우 높았으나, 역설적이게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협회와 지방회의 구조로 인해 사무국 인력들이 단순 업무에 소모되느라 정작 전산화사업과 같은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업무에는 집중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구축을 준비 중인

업무전산화시스템의 기본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회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자 한다.

2. 법무사업계의 업무전산화 현황과 통합시스템의 구축

현재 전산화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업계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전신고의 절차이다. 현행 이전신고의 절차는 변경사항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지부를 방문해 등록한 후 지방회를 방문해 또 등록을 하면, 지방회가 이전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를 다시 수기로 각 회원의 회원 명부에 기재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원본 제출주의'에 따라 우편을 통해 협회로 등록사항변경신청서 원본을 보내고, 우편을 받은 협회에서는 변경내용을 협회의 등록시스템에 다시 입력한 후, 이를 대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다.

더군다나 휴대폰 번호나 집주소는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어서 협회와 지방회가 그때그때 알아서 각자 저장하다 보니 통일된 정보가 없다. 사무원 등록사항은 그보다 더 심각해서 각 지방회별로 제각기 등록을 하다 보니 징계를 받은 사무원이 다른 지방회로 이전을 해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회원들에게 전체 공지할 사항 등을 아직도 팩스 전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무사 간 복대리 신청 시스템이 없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밴드 등을 이용해 해결하고 있다. 지방회 홈페이지에 대국민 법률상담 코너가 있는 경우에도 전담 상담위원을 두고 꾸준히 관리하는 지방회는 거의 없다.

협회나 지방회 내부 업무시스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회계관리도 수기에 의존하는 등 단순 반복적인 일에 사무 인력이 소진되어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도 심각하다. 법무사들의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비용 프로그램이지만, 현재는 각 지방회 홈페이지에 간단한 산출 프로그램을 붙여놓은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모든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현재 협회에서 준비 중인 업무전산화시스템, 일명 '법무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 홈페이지에 구현되는 이 시스템에는 협회 및 지방회의 사무국 회계관리시스템에서부터 법무사 및 사무원 등록관리, 업무보고서 등록관리 등 등록시스템과 공지사항, 법무사 공용게시판, 구인구직, 메신저, 메일 등의 소통시스템은 물론이고, 사무국 전자결재시스템과 국민주택채권발급 대행서비스 등 사무원들과 법무사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시스템들까지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앞으로 협회와 지방회의 회무 및 법무사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업계 홍보 등 대국민 신뢰성 구축까지 이룰 수 있게 되어 우리 업계가 전문가 조직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3. 업무전산화시스템의 구축 범위

가.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협회 및 지방회 사무국의 전반적인 회계관리 지원 시스템이 하나의 분야로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산재한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경비도 절감할 예정이다.

나. 법무사 포털 사이트 구축

(1) 협회 및 지방회 회무전산화시스템

구분	문제점과 개선내용
법무사 등록관리	○【현황】 법무사가 수기로 작성, 지부 경유 후 지방회에 접수하면 지방회가 모두 전산입력 후 원본을 협회로 우편 발송. 협회가 받아 다시 전산 입력 후 대법원에 송부 ⇒【개선】 협회 홈피에 전산 입력하면 지부장, 지방회, 협회 승인을 거쳐 대법원에 송부
사무원 등록관리	○【현황】 기본적으로 법무사와 같으나 대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송부. 문제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나 징계내역이 있어도 다른 지방회로 이전 등록 신청시 자료가 없어 관리 불가 ⇒【개선】 법무사처럼 홈피에서 등록신청 등을 전산 입력하는 방식
전자결재	○ 결재라인을 조직도 또는 직접 이름을 통한 결재선 지정하는 기능 ○ 결재자의 결재 유형(결재, 합의, 전결, 후결) 지정 기능 ○ 모든 결재문서에 대해서 개인문서함/부서문서함/사내문서함으로 구분해 제공 (각 문서함별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결재 시 결재 의견 등록 및 결재 비밀번호를 통한 승인, 반려 처리 ○ 결재 처리한 문서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등록하는 기능 및 추가 의견에 대해서 관련자에게 자동알림 메일 발송 ○ 결재문서에 대해서 관련자 이외 조회가 불가한 대외비 기능 ○ 결재문서에 대해서 보안등급 설정(1~5등급) 기능과 설정된 등급 이상자만 조회 가능 ○ 결재 양식별 기본값 설정 기능(대외비, 보안등급, 보존기간, 수신처, 기안 참조자, 부서발신자) ○ 결재서명 관리 기능 및 결재서명 변경 시 향후 문서에만 적용 ○ 첫 결재자 결재 전까지 기안취소 기능 ○ 다음 결재자가 결재하기 전까지 바로 전 결재자의 결재회수 기능 ○ 결재문서 최종 완료(승인, 반려)에 따른 관련자 알림 메일 발송 ○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거부서의 문서를 신부서로 일괄 이관하는 기능 ○ 특정부서의 결재문서를 타부서에 조회권한 부여하는 기능
관리 기능	○ 사용자별 허용 IP대역 이외 로그인 가능 여부 관리 ○ 메뉴별 허용 IP대역에서만 제공할지 여부 관리 ○ 메뉴별 사용권한 관리(조직도 연동) ○ 사용자들의 접속 관련 로그(계정자명, ID, 접속 IP, 접속일시) 정보 ○ 조직도 관리 및 사원 관리 – 사원별 메일 사용량 일괄 설정 및 개별 설정 기능 – 사원 퇴사 시 로그인 여부, 메일 수신 여부 즉시 관리(실시간) – 사용자별 패스워드 변경 주기 관리 / 메일 1회 발송 시 수신자 숫자 제한 관리 / 메일 수신 추가 계정(별칭) 관리 ○ 다양한 게시판 관리 기능 – 게시판 무제한 생성 – 게시판별 '사용권한, 작성권한, 게시판 관리자' 관리

(2) 법무사 업무전산화시스템

구분	문제점과 개선내용
등기접수내역 등록	○【현황】 사건부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사건부 신고를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회칙 개정 작업 진행 중), 사건부 형식이 부가세 신고용과 고객관리용으로는 부적합 ⇒【개선】 사건부 관리를 편리하게 하여 인건비 절감과 고객관리 다만, 포털이 아닌 개인 법무사의 PC로 저장되는 방식임
본인확인 절차	○【현황】 매도인의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등 서류는 완벽해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나 신분증의 사진으로는 본인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개선】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통신사로 전송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번호가 맞는지 확인
업무보고서 등록	○【현황】 수기로 작성하여 원본을 지부나 지방회로 제출하면 취합하여 전산 입력 후 다시 협회로 전송 ⇒【개선】 전자 사건부를 이용하여 법무사가 업무보고서를 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함
국민주택채권 발급대행 서비스	○ 국민주택 채권의 발급 대행 서비스
비용계산프로그램	○ 고객들에게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쉽게 알려주는 시스템

(3) 협회·지방회 및 회원 소통시스템

구분	문제점과 개선내용
게시판	○ 게시물 등록 시 수신자 지정(조직도 연계)하는 기능 및 수신자들에게 게시물 등록에 대한 알림메일 발송하는 기능 ○ 각 게시판 첫 페이지에 나오도록 하는 최상위 등록 기능 ○ 게시물에 대한 만료기간(영구 포함) 설정 기능 ○ 각 게시물에 대한 조회자 목록 및 총 조회수 정보 제공 ○ 게시물 검색 기능(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본문) ○ 게시물 등록 시 첨부 파일 추가(무제한) 및 첨부 파일 나열 순서 조정 기능 ○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록 및 등록 댓글에 대한 알림메일 발송 대상자 지정 기능 (대상자에게 알림 메일도 발송 처리) ○ 긴급한 사항을 별도로 전광판 형태로 공지하는 기능 (단, 전광판은 그룹웨어 접속자가 어떤 페이지에서 노출이 되도록 제공) ○ 알림글에 대한 댓글 등록 및 등록 댓글에 대한 알림메일 발송 대상자 지정 기능 (대상자에게 알림 메일도 발송 처리) ○ 주요 게시물을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기능

구분	문제점과 개선내용
메신저	○ 그룹웨어 조직도(사원, 부서)와 주기적 동기화 ○ 1:N 대화, 파일전송 및 대화내용 이력 저장 관리 ○ 메일, 결재, 게시판, 협업관리 진행상황 조회 연계 ○ 그룹웨어 주요 핵심(메일, 결재) 건수 정보가 제공되고 클릭 시 해당페이지로 이동 처리 ○ 쪽지, 채팅, 파일전송에 대한 내역 관리 및 별도 백업/복원 기능
공지사항 알림	○【현황】 회원 공지사항을 팩스와 문자 등으로 발송. 비용도 많이 들고 검색, 저장 불가함 ⇒【개선】 공문 등을 각 법무사의 메신저와 스마트폰 메신저로 알림 전달하고, 전자메일로도 발송 개별적으로 미수신자 확인 후 자동적으로 팩스 발송해 업무와 비용을 경감시키고 소통에 기여
법무사 전용게시판	○ 법무사들만의 다양한 목적의 전용 게시판 ○【복대리】 복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미리 복대리가 가능하다고 신청한 법무사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알림 전달 ○【전문 법무상담 Q&A】 세무사회의 경우 6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 세무사 2, 3명이 각 상담에 답을 해줌 우리 협회에서도 영역을 나누어 전문 법무사가 포털에서 상담하고, 자료는 DB로 정리함 질문을 하는 경우 담당 전문법무사에게 알림 전달하고, 담당 전문법무사가 답변을 하는 경우 질문한 법무사에게도 알림 전달함. 스마트폰에서도 구현됨 ○ 의견 제안, 친목단체, 연구회 등의 공용 게시판 ○ 제목, 본문, 파일 첨부, 등록일, 조회수, 진행상황 ○【검색항목】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본문 ○【전자 설문조사】 여러 안건에 대하여 전체 법무사의 설문 조사 가능
사무원과 법무사간 공용시스템	○ Q&A, 복대리, 의견제안, 전문자료, 불친절 신고센터 등의 공용 게시판 ○ 제목, 본문, 파일 첨부, 등록일, 조회수 ○【검색항목】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본문
구인구직	○【현황】 성명도 안 적고 구직하는 경우 많음 ⇒【개선】 항목 입력하는 구조로 개편. 담당 직원이 불법적인 내용이 올라오는지 확인하여 승인해야만 게시판에 게재되는 방식 ○ 상세 항목별 입력 기능이 포함된 구인구직 게시판
메일	○ 메일 송신 실패 시에는 발송자에게 상세 로그를 포함한 리턴 메일 자동 발송 기능 ○ 수신자 지정 시에는 '성명, 부서명(조직도), 메일 ID, 주소록'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수신자가 다른 수신자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각자 메일 발송 기능 ○ 첨부파일을 보내지 않고 파일명만 보내서 다운로드만 가능하도록 하는 대용량메일 발송 기능 ○ 각 편지함마다 검색 기능(제목,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본문) ○ 발송자를 수신 거부자 또는 주소록 추가 기능 ○ 메일을 별도의 개인게시판 또는 전자게시판으로 복사하는 기능 ○ 받은 편지함에서 송신자별로 메일을 즉시 추출하는 기능 ○ 송수신 되는 모든 메일에 대해서 별도 백업(실시간 복사)하는 기능 (단, 송신메일과 수신메일을 구분해서 백업) ○ 특정 메일 계정으로 수신되는 메일을 (지정) 게시판에 자동으로 복사(동기화) 되는 기능

(4) 대국민 홍보 기능

구분	문제점과 개선내용	
온라인 공익법무사제도	○ 대국민 온라인 상담 게시판 기능 ○ 제목, 본문, 파일 첨부, 등록일, 조회수	○ 단계별 항목 선택 후 상담 내용 입력 ○ 【검색항목】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본문
조정센터	○ 조정사례들 기록 게시판(추후 홍보기사 활용)	

4. 업무전산화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

위 시스템이 시행되면 사실상 모든 법무사와 사무원들을 연결하는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다. 법무사는 지방회와, 지방회는 협회와 연결되고, 회원 간 연결도 쉬워져 복대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복대리 신청이 가능해지고, 분야별 전문 상담위원을 통해 업무상 문제들을 실시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계의 핫이슈, 예를 들어 변호사 강제주의 입법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자 설문조사 기능을 통해 전체 회원들의 의사를 손쉽게 수렴할 수 있어 정책 결정도 용이해지며, 일반 법무사들과 사무원들도 게시판을 통해 협회와 지방회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어 조직의 소통이 강화되고 통합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익법무사 제도' 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지역의 전문 법무사들이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상담, 소통이 가능해져 법무사가 명실공히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가로서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법무사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5. 마치며

이와 같은 업무전산화시스템은 오는 5월, 입찰을 통해 설계업체와 계약을 하고, 8월까지 공모전을 통해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수집, 반영하여 내년 2017년 1월 오픈하는 일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구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을 잡고 있는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1개월도 포함되었다.

언젠가 "변화에 가장 빨리 적응하는 곳이 기업이고, 느린 곳이 정부와 교육기관이며, 가장 느린 곳이 법과 법원"이라는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덕분에 법무사라는 직역이 IT 발전 속도가 세계 최강이라는 한국에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버티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법무사 업계를 둘러싸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은 이대로 있다가는 자연 고사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번에 구축될 전산시스템은 우리 업계를 혁신으로 이끌어갈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다른 전문가단체의 시스템도 참고하여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개선할 예정이나, 첫 설계이다 보니 앞으로 시행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2차 개편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 여러분들 앞에 등장할 "법무사 포털 사이트"가 우리 조직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원 및 사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참여를 기대한다.



법무사 업무개선과 회무전산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우리 협회는 전체 법무사의 업무편익 및 회무 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법무사업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정보시스템의 내용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의 각 지방회 소속 회원과 지방회 및 협회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사 업무 개선과 회무전산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 대상 아이디어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아이디어로 대한법무사협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안(본지 p54 참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어야 하지만, 모바일 시스템, 앱 등의 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법무사 업무 및 회무 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포함하며, 당장은 관련 법 규정 때문에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법무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로서, 편의상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공모합니다.

① 법무사 업무 효율 제고 **② 정보 공유**
③ 법무사 이미지 제고 **④ 사무원 경력 관리**
⑤ 기타

참가자격

전국 법무사 및 협회·지방회 사무국 직원

공모기간

2016년 5월 2일(월) ~ 2016년 8월 31일(수)

공모방법

온라인 제출 및 우편접수

- **양식** ① 필수 제출 : 제공된 제출용 양식서(아이디어 요약서 포함)
 요약서 : A4용지 1매 분량(한글 10포인트, 160%행간)
 ※ 별첨 요약서 예시안을 참고해 작성
 ② 부대 제출 : 구체 서술 및 관련 자료 – A4 용지, 분량 무제한
- **온라인 접수** (이메일) ej1890@hanmail.net
- **우편 접수** (06116)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10층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이은정 법무사 앞
 ※ 우편접수는 8월 31일 접수 마감일 당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합니다.

선정기준

내용의 **①참신성, ②실현가능성, ③경제성, ④구체 서술 및 관련자료 제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심사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편**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편**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3편**	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및 상금 각 100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선작 발표일

2016년 9월 26일(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발표 및 수상자 개별 통지 ※ 당선된 아이디어는 이후 『법무사』지에 게재됩니다.

시상일

2016년 10월 10일(월)
※ 당선작 발표일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
이은정 법무사 ☎ 010-9025-6001

News _ Law Trend

이 달의 입법동향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출범, 제1차회의 개최

IT전문가와 '사법정보화 마스트플랜' 수립 예정!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등 국내 IT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정보화 마스터플랜이 구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일(금),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 IT전문가 5명과 내부 관계자 3명을 위원으로 위촉,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에 따른 사법정보화 추진의 방향을 오는 연말까지 설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는 2016년 2월 제정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진행된 사법부의 전자소송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법정보화의 발전방향과 성장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설계하고 수립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①사법정보화를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 ②새로운 IT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법부의 변화, ③전자소송의 확대 및 차세대 전자소송 설계, ④전자법정 및 스마트 오피스 구현, ⑤사법행정업무의 전자화, ⑥사법정보화에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 ⑦사법정보화를 통한 소통 강화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현실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 참가하는 외부 IT전문가는 정재훈 구글코리아 정책팀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기순 전 로앤비 대표(변호사),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변호사), 이일희 제닉스 스튜디오 대표다. 〈편집부〉 법무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시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 범위 확대!

지난 3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액도 높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로 확대, 최우선변제금은 3,200만 원 → 3,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세종시는 보증금 4,5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 원 → 1,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시행령의 시행으로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12만 8천 임차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사



News _ Beommusa Trend

이 달의 업계동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 선임

"국내 유일의 후견전문법인", 법원이 인정!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가 지난 3월 28일,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정용신 판사는 노인성 치매에 걸린 무연고 노인 전모(87·여)씨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사건에서 재산관리 사무를 위한 후견인으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를 선임했다.

이북 출신의 실향민 전모씨는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며 20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으나, 2014년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정신장애로 인한 환청,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절실하지만 가족이 없어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다.

평소 전씨가 자주 이용하던 노인복지관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성년후견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후견본부는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더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심판청구 요청을 하기로 하고, 전씨 거주지 관할 구청에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관련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구청 측이 이 사건을 1년간 방치하면서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성년후견본부는 지자체 외 심판청구권을 가진 검찰에 진정을 넣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 결국 이번 선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법인후견'은 후견인 사망 등의 변동사유 없이 지속적인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후견업무의 정형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업무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한 명의 개인 후견인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큰 사건에서 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법인후견제도는 일본과 독일 등 성년후견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는 이번에 성년후견본부의 경우가 널리 알려진 첫 사례라 할 만큼 흔치는 않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후견개시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건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성년후견본부 최인수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법원이 성년후견본부를 국내 유일의 후견전문법인으로 인정하는 등 성년후견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본부의 위상이 확고해졌다"면서 "법인후견 선임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성년후견본부, '장애인의 날' 주간에 홍보 활동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지난 4월 27일(수), 장애인의 날 기념 주간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숲공원에서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성년후견제도 홍보와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였다.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 창립총회 개최

"무궁무진 신탁업무, 영역 개척의 중심 되겠다!"



법무사들이 민사신탁 분야의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뭉쳤다. 지난 4월 21일 오후 6시 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지하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민사신탁의 영역 확대를 위해 신탁업무 및 관련법 연구에 주력하는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회장 김종원**, 이하 '민사신탁법무사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발족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서울중앙회에서 '신탁실무연구회'를 결성하고 민사신탁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는 등 민사신탁 분야의 영역 확장을 모색해온 14인의 법무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개최되었다.

민사신탁법무사회는 협회 산하의 직능별 임의단체를 표방하며, 그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한 민사신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회원들이 함께 민사신탁 분야의 미래를 설계, 동반성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증여신탁, 상속신탁, 가족신탁, 후견신탁 등 다양한 신탁업무와 관련법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일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김종원 법무사(서울중앙회)는 "법률 규정의 유연성이 큰 민사신탁 분야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 분야"라면서 "앞으로 세무사회나 변호사회, 금융투자협회, 하나은행, 성년후견본부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는 제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민사신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민사신탁 분야가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민사신탁법무사회의 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편집부〉

경기중앙회, 영통새일센터와 사무원교육 업무협약 체결

영통지역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책임진다!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는 지난 4월 15일(금),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장원자)와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법무사 사무원 직업교육훈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가사나 육아부담으로 비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단체는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 인력풀 운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되며, 경기중앙회는 사무원 양성 교육에 적극 관여하여 교육생 모집 및 교육 후 연계 취업 활동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민사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에 관한 **개선방안**



전남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등기관

주거 이전이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해야 할까? 등기신청인의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01. 글을 시작하며

변경등기는 등기의 실행과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실행 이후에 발생한 경우, 등기부와 실체관계의 일치를 위하여 기존 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협의의 변경등기와 어떤 등기를 실행하였는데 그 등기에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사항과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정등기가 있다.[1)]

협의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와 같이 등기부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를 실행하여 등기부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기이다.

다만,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전제가 되는 것은 그 변경 전후에 등기명의인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정등기 중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성명 등을 경정하는 등기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와 주소증명서면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임의대리인(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이후 전거가 있는 경우, 이미 제공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주소로 등기가 실행됨에 따른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이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라 한다)는 주거 이전이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이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대하여 의문이 든다.

본 글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을 포함한 등기 신청인의 편의와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등기관 등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02.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실행

가. 신청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는 그 등기의 선·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한다(법 제23조 제6항).[2] 등기의무자가 있을 수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 또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법원공무원교육원, 『2015 부동산등기실무』, 2015, 제238면
2) 「부동산등기법」은 '법', 「부동산등기규칙」은 '규칙', 대법원 등기예규는 '예규'로 약칭하여 표기한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변경 전의 표시'와 '변경 후의 표시'로 나누어 기재하고 등기원인은 '전거', 등기원인일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전거 연월일'을 각 기재한다.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이 여러 차례 변동된 경우에는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현재의 표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연월일도 최종의 사유와 그 발생연월일을 기재하면 된다.[3]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재사항 외에 '경정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은 실무상 신청인이 잘못 신청하여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착오', 등기원인일자는 '착오가 생긴 등기의 신청연월일'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4]

다. 첨부정보[5]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구법 제48조 제1항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대표적인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3)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2015, 제20~21면
4)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44면
5)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21면, 제44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이 2015. 12. 30.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다(행정자치부 주민과-6693, 2015.12.30.).
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방법 개선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현행 + 사실증명 추가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사항 전산입력 : 신청인 직접 수기 → 관계 공무원 전산입력, 신청인 확인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인하시한 2년 연장 : 2015.12.31.까지 300원 인하 → 2017.12.31.까지 연장
④ 새마을금고의 거래상대방 기재사항 축소 등 : 기재사항을 축소하는 은행·보험회사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추가

과 같이 시장 등의 명의로 발급된 서면을 말한다.

실무상 많이 나타나는 예로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이 등기명의무자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 외국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 외국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의 변경을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정증서 등

③ 재외국민이 등기명의인인 경우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④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 내용이 기재된 정관, 그 밖의 규약이나 결의서 등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명의인표시의 착오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법 제48조 제1항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6]'이 대표적이다.

라. 등기의 방식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52조 제1호).

마.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7]

(1) 원칙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등기를 선행하지 않고 신청서에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변경 후의 표시로 기재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법 제29조 제7호의 사유(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 대상이 된다.

(2) 예외

이와 같이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등기부상의 표시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예외가 인정된다.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부상의 주소가 등기신청서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규칙 제122조).

다만,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주소변경인 경우에는 직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며,[8] 이러한 특칙은 소유권이전등기에만 해당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한 후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속등기의 경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상 표시가 서로 달라도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장 등의 서면이나 그 밖의 증명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

6)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그 밖에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법무사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44면).

7) 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22~23면

8) 예규 제1436호

9) 선례 4-362

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9]

③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10]

④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법 제31조), 별도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으며(규칙 제54조),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03.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

가.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필요성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존재 의의는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기재사항과 실제 등기명의인에 대한 실체관계로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를 등기기록과 일치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등기의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의 원인이 되는 등기의무자의 전거는 복잡하고 주거의 변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등기부에 비교적 근래의 주소[11]와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으로 등기관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에 의심이 없다면, 자격자대리인 등 신청인의 편의성과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를 제한적으로 생략하는 것을 고려할 시점이 되었다.

이는 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었고,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등 안정적인 물적 자원과 전문화된 등기직렬의 운영에 따른 인적 자원의 확보에 따라 등기시스템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에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시기 및 「주민등록법」 시행(1962.5.10.) 이전에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한 경우 등은 현재와 같이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가 반드시 선행된 후 다른 등기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등기부와 등기의무자의 실체관계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제도의 큰 틀과 법 제29조 제7호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전자신청과의 형평성에 따른 필요성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경우 자격자대리인 등 신청인이 등기의무자의 현재의 주소가 아닌 등기부 상의 주소를 그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방법에 따라 업무처리의 방식이 달라진다.

서면신청(e-Form 신청 포함)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소기재란을 확인하여 등기부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례인데, 이는 등기의무자의

10) 예규 제1408호 6, 제451호, 제593호

11) '근래의 주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최근 5~10년 이내에 등기의무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을 등기관이 명확히 할 수 있는 등기로 정의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첨부해야 할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경우가 달라진다. 전자신청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등기의무자의 전자서명으로 족하므로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의무자에 대한 주소 확인은 오직 신청서에 입력된 주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등기의무자의 현재 주소와는 관계없이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주소를 신청서에 그대로 입력하였다면 이를 등기관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04. 개선방안

가.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의 생략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전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써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여 동일성에 의심이 없다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는 생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등기의무자는 더 이상 유효한 등기명의인이 아님에도 최근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하여야 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며,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등기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등기부에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등기의무자의 특정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기의무자가 주소 이전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및 일부 지분이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선행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의 제한적 생략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런데 등기권리자(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위 유효기간 내에 발급받아 자격자대리인에게 그 등기를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접수) 전에 전거가 있었지만 새로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면 변동 전의 주소가 등기부에 그대로 기입된다.

이는 등기권리자가 자격자대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고 며칠 사이에 전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거 이후로 늦게 신청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러한 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등기를 누락하고 다른 등기가 신청되었다면 법 제29조 제7호에 따른 각하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자대리인 등의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의 등기권리자)의 전거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기준 3

12)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새로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만 제공되므로(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그 밖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 사유가 있는지 등기관이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신청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는 등의 사유로 등기명의인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음을 등기관이 알게 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에 따라 각하한다(법원행정처, 앞의 책, 제22면).

개월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써 등기관이 그 동일성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면 신청착오에 의한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수적인 첨부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등기를 생략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주소기재 난에 현재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를 병기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05. 글을 마치며

등기의무자의 신청정보 표시와 등기부상의 기재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효력 측면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대하여 등기관이 신청정보를 통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그 동일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까지 모두 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는 시대적 변화 및 전자신청의 확대 측면에서,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는 등기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생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3)]

13) 2015년도 1~3분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1분기 929,638건, 2분기 1,125,889건, 3분기 860,946건(계 : 2,916,473건)이다(출처 : 인터넷등기소 통계). 등기관의 직권 ·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 · 경정등기 건수를 약 5~10% 정도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기 실무상 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예는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그 등기가 선행되지 않았을 때 자격자대리인 및 등기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빈번한 사례로 자격자대리인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날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법 제29조 제7호에 따른 각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등기명의인의 주소는 동일인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전거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관이 확인하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은 생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전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관의 직권 변경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유효기간 내에 전거한 때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생략하는 것을 제안한다.

등기절차는 그 권리관계와 원인서류 등이 명백한 경우를 전제로 간소하고 단순화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하고 등기현실이 바뀌었음에도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격자대리인과 등기관 모두에게 소모적일 뿐이다. 불필요한 사항과 생략해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한 선행등기를 줄임으로써 자격자대리인은 보다 정확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 또한 꼭 검토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등기 인적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

민사 집행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김인수 법무사(서울북부회)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에 새로운 판시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여러 문제를 종합 정리한다.

01. 들어가며

체납처분은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으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다. 국세, 지방세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70②, 「국민연금법」 79③).

근래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에 새로운 판시내용이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하며, 아울러 금전채권에 관한 체납처분압류와 관련된 집행공탁의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02.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

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국가는 채권자(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의미함)에 대위하여(「국세징수법」 41②),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2476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8.10.31.등기 제3402-1100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국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4.6.24.선고 94다2886 판결, 1997.4.22.선고, 95다41611 판결).

따라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단일의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국가에게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며(대법원 1988.4.12.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99.5.14.선고, 99다3686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없다(법원행정처 발행 2009공탁실무편람 373면).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 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징수법」 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4.12.선고 2004다20326 판결).

03.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대법원 2008.11.13.선고 2007다33842 판결은 "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

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이후에 행해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이 허용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절차에 의한 가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04.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최근의 대법원 판례 중 대법원 2015.7.9.선고 2013다60982 판결은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 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 판결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나, 단일 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위 경우도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는 있지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05.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위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판결과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는 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236②),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 판결).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판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 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판결).

위와 같이 최근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판결 및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

203833판결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가 송달된 후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추심경합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는 종전 공탁실무(2005.11.7. 공탁법인과-609 질의회답 등)는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는데, 배당절차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및 「관세법」 제3조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2권』 535면).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는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소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추심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9.7.24.선고 79다1023판결).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명하는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00법원 2015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될 것이며,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인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심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5.28.자 2007마767 결정).

추심채권자가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심권자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5.1.13.선고 2003다29937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8다59391판결).

압류경합의 경우에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

원 2003.5.30.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을 교부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공탁하지 않았다면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65180판결).

06.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



229조 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8.27.선고 2013다203833판결).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407면, 법원행정처 발행 『2009 공탁실무편람』 487면).

그러므로 금전채권에 관하여 선 체납처분압류와 후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압류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관하여 선 압류 및 전부명령과 후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생긴 압류 등의 경합은 비록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첨부한 전부채권자의 지급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선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으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이다(법정 질의회답 2001.3.15. 제3302-114호, 대법원 2000.6.23.선고 98다31899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제3채무자로서는 선행의 전부명령의 확정여부를 통상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1.31.선고, 88다카42판결, 법원행정처 발행『2009 공탁실무편람』371면).

07.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효과

가. 채무변제의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채무변제의 효과가 있다(대법원판례 1999.11.26 선고 99다35256판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이 변제공탁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공탁금의 출급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법원행정처 발행『2009 공탁실무편람』338면).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피압류채무에 해당하는 채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91385판결).

나. 집행종료의 효과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하면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존재 의의를 잃고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되어 그 집행은 종료된다.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로 전환되므로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나 공탁으로 인한 배당가입차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이후에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설령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 등 절차에서의 배당수령권 포기일 뿐, 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364면, 법원행정처 발행『2009 공탁실무편람』358면).

또한,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다. 배당가입차단의 효과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 등에 가입하는 것이 차단된다. 이러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 등 절차에서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다.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때(「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배당절차는 개시되나 구체적으로는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5.13. 선고 2005다1766판결).

08. 집행공탁 후 압류·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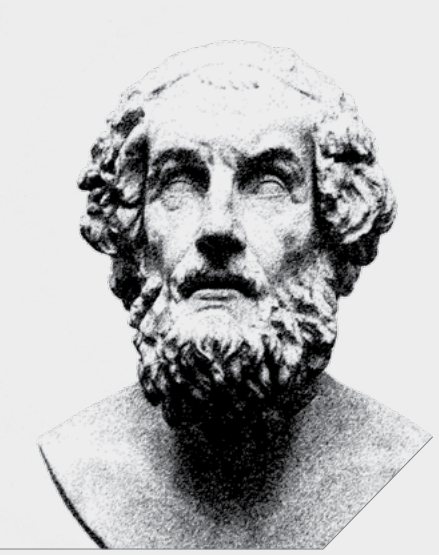
제3채무자가 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 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87502판결). 법무사

〈바로잡습니다〉

『법무사』지 지난 4월호 '법무사 실무광장' p61면 〈참고 1〉 중 3번 내용에서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과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된다"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대습상속에 준하여 '손자녀'가 포함된다는 이론은 소수설입니다(법원행정처 2012년 『상속등기실무』 p156 7~11째 줄).

「일리아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이상진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 법학박사

방랑시인 호메로스의 '트로이 전쟁' 영웅기

고대 그리스의 방랑시인 호메로스(Homeros)가 지었다고 알려진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 작품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던 구송시(口誦詩)를 집성해 기록한 서양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이만한 분량으로는 거의 세계 최초의 문학작품이다.

두 작품의 무대로 설정된 시기는 당대가 아니고, 그로부터 수백 년 올라간 과거의 잃어버린 문명, 미케네 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트로이 전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두 작품의 주제이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오늘날까지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튼튼한 구조가 있는 작품의 특성상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합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뛰어난 시인이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그가 전체를 정리하고 구조를 부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일리아스」는 도시 트로이의 별명인 '일리오스(illi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리오스 이야기' 즉, '트로이 이야기'와 같은 뜻이다. '파리스의 비극'이 빚어낸 트로이와 그리스의 10년 전쟁 중 마지막 해를 그려낸 총 24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이다.

워낙 방대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 작품이 서로 연결된 이야기로 「일리아스」가 1편, 「오디세이아」가 2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누구나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외우며 자랐다. 특히 길고 긴 트로이 전쟁을 단 며칠간의 사건 속에 압축해 놓은 「일리아스」는 서양인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일리아스」는 어떻게 서양정신의 기원이 되었나?

절세미인 헬레네는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왕비였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유혹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1000척의 배를 거느리고 트로이를 공격한다. 비록

트로이 성의 함락엔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가멤논에게 모욕을 당한 그리스 최고 영웅 아킬레우스는 전쟁에서 손을 떼게 된다.

또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간청으로 주신(主神) 제우스는 신들에게 원조하지 말도록 명하여 그리스군을 패배케 한다. 하지만 그리스군의 패배를 좌시할 수 없던 아킬레우스의 친구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군대를 이끌고 출전, 그리스군에 승리를 안겨주고, 자신은 트로이의 장수 헥토르에게 살해된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로 돌진하여 헥토르를 살해하고 시체를 욕보이며 친구의 원수를 갚는다.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은 신들의 비호로 야음을 틈타 아킬레우스의 막사를 찾아가 헥토르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일리아스」는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극적 구성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단테 등 당대 최고의 현인들을 감동시켰고, 유럽인의 정신과 사상을 낳은 원류, 서구사상의 정수로 손꼽히는 작품이 되었다.

또한 「일리아스」는 사고하는 방식에 있어 신의 눈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인간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최초의 작품이다.

호메로스의 전쟁 이야기 속에 담긴 가치와 이상을 통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서양정신의 원류로 평가받고 있는지 알아보자.

거침없이 자유로운 저항, 부정의 정신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여, 이렇게 한다면 누가 당신 말에 복종하겠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오로지 당신 동생 메넬라오스의 원수를 갚아 당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이런 사실도 잊고 내 명예의 선물을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다니."

「일리아스」는 이같이 으르렁거리는 두 영웅의 싸움질로 시작한다. "파렴치하고 교활한 자"로 몰아붙이는 자는 아킬레우스다. 그리스군의 대장이요, 사실상의 왕인 아가멤논에게 먼저 삿대질하는 이는 아킬레우스였다.

아가멤논이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딸 크리세이스를 풀어주지 않고 욕보인 것이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었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에 상응하여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이었던 미녀 브리세이스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런데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억울했다. 그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애첩 브리세이스까지 내놓으라고 하다니! 그는 아가멤논을 주정뱅이이자 겁쟁이라고 비난하고는, 헥토르가 그리스군을 도륙하는 날이 와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그 누구 앞에서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침없는 자유의 용사, 이것이 호메로스가 그려내고 있는 영웅의 모습이다. 그 대상이 인간이건 자연이건 투쟁하고 정복하는 그 이면에 있는 '부정의 정신'이 서양인의 정신적 특질의 원형이었다.

이 투쟁정신이 개인 인격의 존엄이 되어 그리스에서 꽃피기 시작한 민주주의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이 정신은 소크라테스의 선택에서도 이어진다. 서양과학의 역사는 이 부정정신의 역사였다. 아리스토텔레스를 갈릴레이가 부정하자, 뉴턴이 갈릴레이를 넘어서서 근대과학을 완성하였다. 이후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뉴턴을 뒤엎어 버리자, 양자역학이 등장해 아인슈타인을 부정해 버린다. 부정의 부정, 그렇다면 부정의 원조는 바로 호메로스였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명예'

트로이 전쟁은 약탈 전쟁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왜구의 노략질로 보면 된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범죄행위

를 미화하기 위해 신화를 빌려왔다. 불화의 여인 '이리스'는 황금사과를 던지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만이 이 황금사과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미에 대한 여인들의 집착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 황금사과를 차지하기 위해 열린 미인 콘테스트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밀린 헤라와 아테네는 복수를 시작하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그리스 신들의 트로이 정벌이 '신이 결정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명분 속에 일어난다.

근대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미화한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이다. 전쟁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 자체였다. 아무리 호메로스에 의해 그들의 용맹과 지모가 칭송된다 한들 그들의 전쟁은 약탈이었다. 그런데 여기 아킬레우스가 보여준 특이한 장면이 있다.

"보물들, 구역질난다. (중략) 아니, 땅 위의 모든 모래알과 먼지보다 많은 보물을 줄지라도 아가멤논은 나의 투지를 되돌릴 수 없다. 이 찢어지는 분노를 달래지 않는 한."

이상하게도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이 제시한 엄청난 보물도, 자기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제안도 코웃음으로 일축한다. 아킬레우스는 전리품을 탐하는 전사가 아니고 명예를 위해 사는 진정한 영웅이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재물로는 살 수 없는 영웅의 마음, 재산보다 소중한 것으로서, '명예'를 영웅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로 그려냈다.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호메로스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세계관 속에 살았다. 트로이 전쟁이 터진 것도 신들의 장난 때문이요, 트로이가 몰락한 것도 신들의 뜻이다. 아가멤논이 브리세이스를 요구하여 아킬레우스를 격분시킨 것이나, 테티스의 간청으로 제우스가 그리스군의 패배를 유도한 것이나, 헥토르에게 파트로클로스가 죽임을 당한 것이나, 모두 신의 뜻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리스 신들은 인간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인간은 신들의 장기판에 놓인 말들인가? 하지만 호메로스는 「일리아스」를 통해 신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딪혀 연출되는 인간세상의 복잡다기한 모습을 재현한다. 신의 뜻에 의해 세계가 움직인다는 그리스인들의 오래된 신념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으므로, 트로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신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그 신의 뜻은 인간에 의해 실현된다. 호메로스는 신의 섭리가 인간의 의지를 매개로 실현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의 소통이다. 세상은 신의 의지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동의를 얻어 관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모든 사건을 신과 인간의 대화 속에서 결정되도록 그린다. 헥토르의 시신을 아버지 프리아모스에게 넘겨주는 아킬레우스의 관용도 신들의 합의가 아킬레우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호메로스는 도처에서 인

간을 신과 대등한 지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일리아스」 전편에 걸쳐 매우 특이한 중대 사건이 일어난다. 아킬레우스의 사랑하는 벗, 파트로클로스가 헥토르의 손에 죽는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여 원수를 갚기 전에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다짐한다.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이 헥토르를 죽이면 그 다음에는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떠올리고는 슬픈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자식의 고집을 이기는 부모가 있던가. 신도 어찌 못하는 인간의 결단. 인간 운명의 궁극적인 결정권은 인간에게 있다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옹호야말로 호메로스가 그리스인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다. 인간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스인들에게 그 '인간의 눈'을 준 이가 바로 호메로스였던 것이다.

사실적인 너무나 사실적인!

호메로스의 묘사는 사실적이어도 너무 사실적이다. 이는 헥토르를 살해한 후 그의 시체를 끌고 다니는 아킬레우스의 잔혹성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극치를 이룬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에서 트로이 포로들을 산 채로 화장해 버린다. 이 장면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잔혹했으면 플라톤마저 나서서 호메로스의 이런 장면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 냉혹한 사실주의야말로 동양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서양인들만의 지적 특질이다. 동양화는 변하지 않는 것만을 그리기에 동양화에는 그림자가 없으나, 서양의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자를 면밀히 관찰해 그림자에게까지 빛깔을 집어넣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이러한 서구인의 '냉정한 객관성', 그 숙명적 사고방식의 뿌리, 저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트로이 전쟁, 과연 역사적으로 실재했을까?

고대에는 트로이 전쟁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으나, 19세기의 비판적 역사 연구에서는 허구적인 신화로 취급하는 풍토가 강했다. 그러나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Heinrich Schliemann)이 1870년부터 트로이 유적지를 발굴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를 얻게 되었다.

또, 1930년에 미국의 칼 블레켄(Carl Bregen) 교수가 트로이 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재조사를 하는 등 근대의 고고학자들은 오늘날 터키 서쪽 다르다넬스 해안에서 9층으로 쌓인 트로이 유적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여섯 번째 층이 그리스군에게 기원전 약 1200년경에 파괴된 도시의 유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언에 의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원정 길에 이곳 트로이를 방문하여 아킬레우스를 참배했다고 한다. 그는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호메로스의 작품을 아주 상세하게 배웠다. 에게해와 흑해를 잇는 다르다넬스 해안의 관문을 점령하고 있는 트로이 성은 여러 차례 이민족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 파괴되고 재건축되는 과정을 거듭했다. 유적지에서 마지막으로 형성된 층은 로마인들이 점령하여 세운 도시 '일리온'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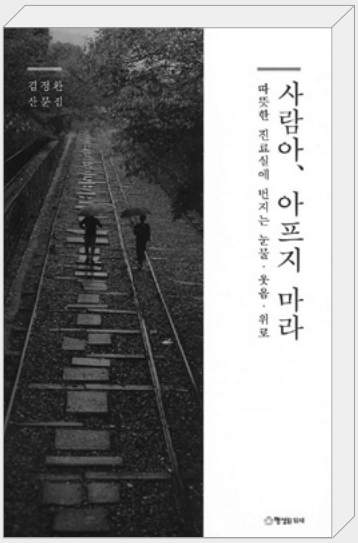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원인을 신과 영웅들의 경쟁 및 불화로 돌리고 있으나, 전쟁의 실제 원인은 다르다넬스 관문을 통과해 흑해에서 교역을 시도하던 그리스인들이 그곳을 지키며 일종의 통과세를 요구하는 트로이인들과 충돌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참고문헌
1. 『철학콘서트 2권』, 황광우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2. 『인문학 명강 서양고전』, 21세기북스, 강대진편
3. 이태수(인제대 석좌교수) 강의자료(조선일보 2015. 5. 중앙일보)
4. 고미숙(고전평론가) 「중앙일보」 2016.2.19.
5. 기타

『사람아, 아프지 마라』

15년차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실 이야기

"가장 숭고한 순간은 가장 후미진



저자 김정환
행성B잎새
2016.02.05

진료실에 꽃피는 '가족 간의 사랑'

선망의 직업 '의사'를 서민들의 친근한 이웃으로 가깝게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시골의사 박경철'이다. 시골의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알콩달콩한 사연들을 담은 그의 책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졌다. 박경철의 영향 때문인지 이후 의사들의 진료실 에세이집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그러나 크게 주목을 받은 책들은 없었는데, 최근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등장했으니 바로 의사 김정환의 산문집 『사람아, 아프지 마라』다.

저자 김정환은 '가정의학과' 15년차 의사다. 가정의학과는 감기몸살 같은 일상적 질병부터 평생을 비슷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진 어르신들이 '주치의'처럼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명칭 속의 '가정'이라는 단어가 내과, 이비인후과, 치과, 정형외과 등과 달리 친근하게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산문집의 글들 역시 몹시 '가정적'이다. '아프지 마라'는 제목과 달리 지나치게 슬프거나 비극적인 아픔들보다는 진료실에서의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사랑의 풍경'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주로 가족 간의 사랑이다.

젊거나 늙은 부부, 손자와 할아버지, 부모와 자식 등이 아픈 가족을 두고 보이는 애잔한 사랑이 책 전반을 타고 흐른다. 그러다 가끔은 네티즌들이 즐겨 쓰는 '빵~ 터지는 개그'도 끼어 있다. 이 책의 첫 이야기 제목이 '사랑'인 것이 우연한 배치가 아닌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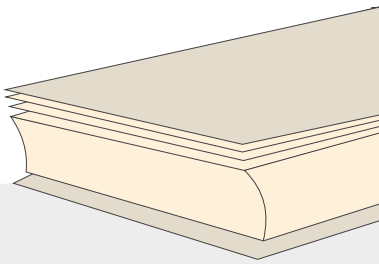
참 꼬장꼬장한 노인네다 싶었다. 진료실 문을 열고 70대 노부부가 들어왔다. 한 달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를 시작한 할머니와 그 남편분이다. 할아버지는 몹시 수줍음이 많은 것 같은 할머니를 대신해 유독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꼬치꼬치 질문을 쏟아낸다.

그리고 "아, 약을 계속 먹으라 그거죠?"라는 식으로 의사의 답변을 똑같은 목소리로 복창한다. 그게 좀 짜증이 난 의사는 환자인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의사에게 속삭이신다.

"이 사람, 귀가 거의 안 들립니다. 집사람이 남들한테는 부끄럽다고 얘기 못 하게 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곳에 존재한다!”

최보기 북 칼럼니스트
구로꿈나무어린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의사는 오히려 그동안 할아버지를 오해해서 더 죄송스럽다며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다.

이것이 첫 이야기 「사랑」의 요약이다.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쉽게 감이 왔으리라.

가슴 먹먹해지는 환자들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영구차를 따라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떨어진 조화를 손에 담아 뿌리며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라며 깔깔거리는 모습에서 의사는 아이의 웃음소리만큼이나 편하게 가실 할아버지를 상상한다. 아내에게 주눅 들어 사는 남자 환자를 보며 의사는 사내로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

친한 직장 동료 둘이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위내시경 결과 한 사람은 문제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심각하다. 의사는 다음 날 둘이 함께 결과를 들으러 오면 심각한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다.

병원 복도에서 전화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본다며 친정엄마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젊은 새댁 때문에, 딸의 추궁에 쩔쩔매는 모습이 훤히 그려지는 전화기 너머의 엄마 때문에 의사는 무척 짜증이 난다.

그런데 잠시 후 “엄마, 우리 OOO이 수술 잘할 수 있겠지? 나 너무 무서워”라며 흐느끼는 딸을 보며, 의사는 ‘딸과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를 생각하며 아이의 수술이 잘 끝나기를 마음속으로 빈다.

병원에 온 초로의 할머니가 ‘병원에 왜 왔는지’ 묻는 의사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 한참을 침묵하던 할머니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고는 “생각나면 다시 올게요” 하면서 병원 문을 나선다. 치매 환자의 슬픔이다. 의사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해진다.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회진 시간, 인적이 드문 병동 끝의 계단을 일부러 덜그럭덜그럭 구두 소리를 울리며 내려가는데,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계단 끝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의사는 경망스런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서 있는다. “가장 숭고한 순간은 가장 후미진 곳에 존재한다”며. 법무사

더불어 읽기



『이병률 여행 컬렉션』

이병률 지음
달 출판사 펴냄

로망이 로망인 것은 로망이기 때문인가. 먹고살 걱정 없이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행하며,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은 누구나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로망이다.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등 세 권의 여행 산문집을 묶은 문고판 『이병률의 여행 컬렉션』은 그래서 부럽고 또 부럽다. 앞의 두 책은 예전에 출판된 스테디셀러이고, 세 번째는 최근에 출판된 신간이다. 이병률 시인의 시 같은 산문은 소리 소문 없이 매니아 팬들을 두텁게 거느리고 있다.

『검사외전』

적법절차로는 '진실' 밝힐 수 없는, 검찰권력에 대한 풍자
영화적 허구 지나쳐, 검사는

박용선 법무사 (서울중앙회)



한국 / 범죄 · 코미디 / 126분
2016.02.03 개봉
15세 관람가
감독 이일형
출연 황정민, 강동원

형사소송법적 절차 무시하는 구성, 개연성 상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필자는 영화의 제목이나 예고편을 보고 검사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호기심에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관람한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 스토리 전개의 허구성이 지나쳐 형사소송법적 이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을 때가 많아 실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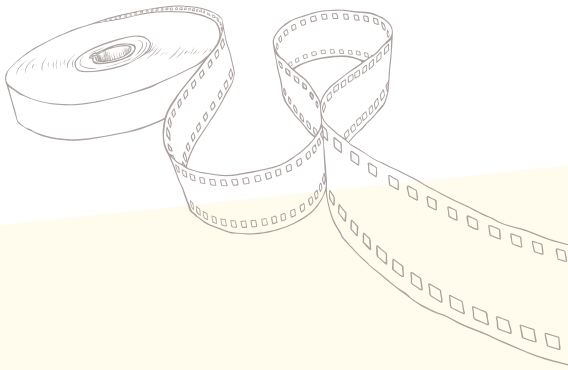
그나마 2011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주제로 한 「의뢰인」이나 2009년 「이태원 살인사건」은 사실관계에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었고, 2005년 「공공의 적2」는 검사 스스로 적법 절차에 의한 수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의감만으로 사건을 풀어가는 일지매와 같은 의적 유형의 검사상을 보여주었지만, 나름대로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는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개봉한 「검사외전」은 정도가 좀 심하다.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 주체인 국가기관이라는 점은 무시한 채, 한국 법조계에서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법적 적법 절차나 정의로운 방법으로는 밝혀지지 않는다는 예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다 보니 검찰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현실적 개연성이 상실되었다.

어떤 장르의 영화이든 감독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이다. 이 영화의 이일형 감독도 형사소송법적인 줄거리를 코미디 형식에 녹여 궁극적으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풀어보고자 한다. 하지만 단순 오락물의 코미디 영화로 치부하기에는 영화가 시사하는 반어법적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입증

없고 사기꾼만 있네!



은 검사에게 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인권보호의 원칙 속에서 수사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이상이다.

그리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또 범죄수사의 주체로서 기소독점권을 갖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는 검사들은 이러한 적법절차에 의해 형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범죄수사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검사외전」에서도 비슷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검사 역의 배우 황정민은 공동주연이지만, 사기꾼 역할의 강동원을 받쳐주는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 영화의 스토리도 형사소송법적 절차에 입각해 진행되지만, 그 원칙은 허구로 포장된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검사는 없고 사기꾼만 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이 "검사 황정민과 사기꾼 강동원의 투톱 영화가 아니라 사기꾼 강동원의 원톱 영화"라고 평했듯이 검사 황정민은 사기꾼 강동원의 역할을 돋보이게 하는 소비적 캐릭터로서 등장할 뿐이다.

소송 현실에 맞으면서도 웃음과 감동을 줄 수는 없을까?

따진 김에 좀 더 따져보자. 순전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 검찰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한 상명하복의 조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영화에서 변재욱 검사(황정민 분)의 상사인 차장검사 우종길(이성민 분)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를 파헤치려는 변재욱을 제거하기 위해 변재욱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살인하고 그 죄를 변재욱에게 뒤집어씌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담당검사가 상사의 사무분담 변경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종길이 상관으로서 상명하복의 질서에 따라 변재욱을 직무에서 배제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구태여 변재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영화에서 변재욱은 피의자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는데, 수사검사가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비약이다. 수사과정에서 감금된 피의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이지만 지금까지 그만큼이라도 선고받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뿐만 아니라 강동원이 분한 사기꾼 한치원이 변재욱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변재욱의 동료 검사 양민우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위법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사진을 오려붙이고 바코드도 없는 출입증으로 검찰청을 드나드는 등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인다.

아무리 영화적 재미를 돕기 위한 허구적 구성이라 하더라도, 그 횟수가 지나치게 잦고 현실과의 개연성을 상실하면 반감이 생기게 마련이다. 재미있고 후련하다는 관객 평들도 있지만, 검찰의 현실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검사가 등장하는 영화에서는 최소한의 적법 절차는 지키도록 그렸으면 한다.

소송절차의 현실에 맞게 하면서도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검사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검사를 소재로 한 제대로 된 영화가 등장하길 기대해본다. 법무사

양고기와도 찰떡궁합, "란 리제르바 리오하"

LAN Reserva, RiojaGraves

이태근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몇 년 전 이법 사무실에서 실무연수를 받았던 A법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수 중인 시험 21기 수습법무사와 함께 방문했다.

어느새 어엿한 지도 법무사가 된 A법을 보니 감개무량한 마음에 이법은 일전 괜찮은 스페인 와인이라며 선물 받은 '란 리제르바 리오하(LAN Reserva, Rioja)'를 데리고 들뜬 마음으로 두 법무사를 양고기집으로 모시고 갔다.

'란 리제르바 리오하'는 스페인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와인 생산지 리오하의 '보데가스 란(Bodegas Lan)'에서 템프라니요(Tempranillo) 품종 80%, 마주엘로(Mazuelo) 10%, 가르나차(Garnacha) 10%의 비율로 블렌딩된다.

'Reserva'는 12개월의 오크통 숙성과 24개월의 병입 숙성을 거쳐야 얻는 이름이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 이법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코르크 마개를 따자 선명한 체리빛 레드 컬러에 과일과 나무가 조화된 부드러운 향이 밝고 따스한 봄의 전령처럼 코끝으로 스며든다. 와인의 맛을 결정하는 어느 요소도 모난 구석 없이 부드럽게 목을 타고 넘어간다. 녀석과 양고기와의 만남 또한 찰떡궁합이로세~!

와인잔을 기울이며 예전 공부하던 시절, 수습을 거치고 수습 법무사를 지도하던 시절, 그리고 이제는 중견 법무사로서 업계의 현황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우다 밖으로 나오니 4월의 봄도 가려는지 눈발처럼 벚꽃이 나리고 있다. 법무사

1인용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 Device)

36만 원이면 살 수 있는, 1인가구 시대 자동차!

바퀴 하나에 몸을 싣고 유영하듯 가로수길을 누비며 전철역, 쇼핑몰, 캠퍼스를 활주한다. 최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전기에너지로 구동되는 1인용 이동수단은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로 통칭된다.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1인가구 시대에 자동차를 대체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촉망받고 있다.

2011년 두 개의 바퀴에 균형 센서가 달린 미국의 '세그웨이'가 첫선을 보인 이래, 지금은 바퀴가 하나인 중국의 나인봇, 의자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기울여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일본 혼다의 '유니커브'(Uni-Cub),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형태로서 간편한 휴대할 수 있는 미국 인벤티스트의 '호버트랙스(hovertrax)'가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인벤티스트의 '호버트랙스'



중국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

초기 '세그웨이'는 고가에다 무게도 부담스러웠지만, 지난해 출시된 샤오미의 '나인봇 미니'는 무게도 12.8kg에다 가격도 1999위안(약 36만 원)으로 파격적이어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중화에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비바람이나 추위, 햇볕 등의 날씨 제약이 따르며, 도난의 우려와 안정성 미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개인 이동수단은 물론 재고창고와 물류센터, 공장 등에서의 산업적 용도, 순찰과 경비 업무에서의 공공적 용도 등으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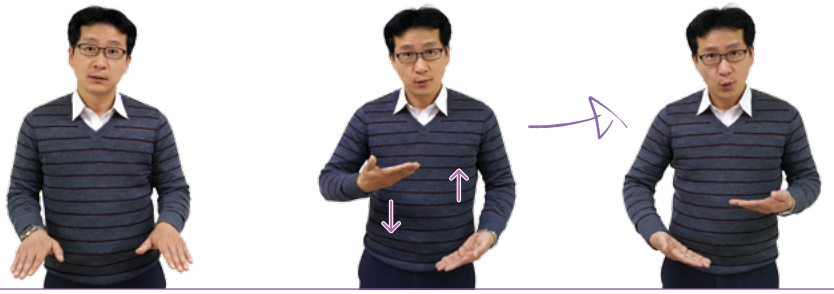


최초의 퍼스널 모빌리티 '세그웨이'

오늘 바쁘세요?

01 양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위 아래로 두 번 흔든다.

02 양 손바닥을 배 앞에서 위로 하고 엇갈리게 교차시킨다.



아니오, 한가합니다.

01 가슴 앞에서 양손 엄지와 검지만 폈다가 뒤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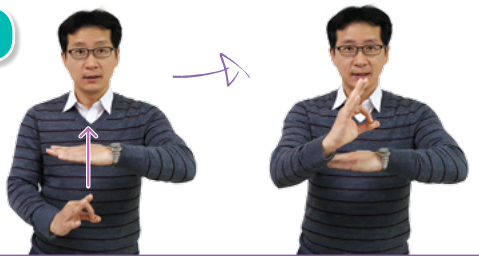
02 왼 손바닥에 오른손 엄지를 붙이고 검지를 앞쪽으로 돌린다.

03 손끝을 모은 오른손으로 가슴 왼쪽과 오른쪽에 한 번씩 갖다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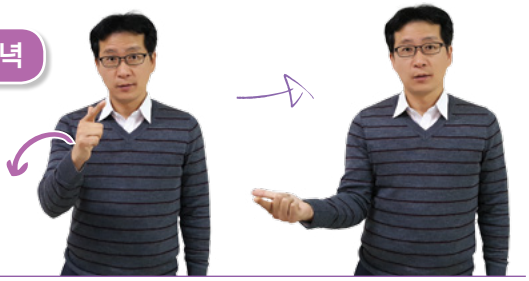


단어도 배워 봐요

아침



저녁



농인에게 다가가기!

농인과 영화

지난 2011년 개봉되었던 영화, 「글러브」 보셨나요? 잘나가던 프로 야구선수가 음주폭행으로 징계를 받자,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청각장애 야구부(충주성심학교) 임시 코치로 들어가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요.
농인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한국영화라 자막이 없는 이 영화를 정작 당사자인 농인들은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개봉할 때, 농인들을 위한 자막을 넣어 그들도 문화 콘텐츠를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침침할 때" 효과적인 5가지 운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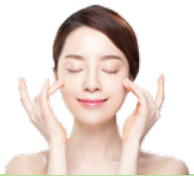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잠시도 눈을 떼기 어려운 현대인들은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죠. 눈이 피로해 침침할 때, 손을 이용해 손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 5가지를 소개합니다.

눈 마사지

손바닥을 비벼 냄새가 날 때까지 충분히 열을 낸 뒤,
두 손바닥을 양쪽 눈 전체 부위에 덮어주기를 반복한다.

눈자위 지압

검지와 장지 손가락 끝을 이용해 눈썹 뼈와 눈꼬리 등
눈자위 주위를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 마사지를 한다.
눈의 피로감을 빠르게 덜어주며 두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눈동자 굴리기

얼굴을 중심으로 위아래, 좌우, 사방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눈동자를 굴린다.
피로한 눈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로 눈이 시원해진다.

명암 운동

최대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을 가려 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손바닥을 활짝 열어준다. 이 동작을 번갈아 가며
16회 정도 반복한다. 눈의 홍채를 여닫는 운동으로
빛으로 긴장된 눈을 이완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목 관절 풀어주기

목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 흐름이 원활하면,
눈의 피로감도 저절로 해소된다.
목 뒤를 손가락 끝을 이용해 조금 세게 잡아당기듯 눌러준다.
뭉친 부분이 풀릴 때까지 수시로 목 뒤를 마사지해 준다.
또 고개를 좌우, 위아래로 움직여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목을 돌려준다.

tip

눈 건강에 좋은 음식




결명자, 블루베리



오메가3




홍당무, 국화차

제53회 '법의 날', '신정순 법무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지난 4월 25일(월)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당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신정순 법무사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신정순 법무사(서울동부회)는 95년부터 현재까지 21,000건의 무료상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민사조정위원으로서 320여 건의 조정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 및 법률구조사업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 날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되었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 보고

◆ **회관관리위원회 회의(4.11.)**
– 법무사회관 10층 석면해체·제거 및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실시 : 공개입찰, 입찰제안서 공개 개봉

◆ **2015회계연도 결산 감사 (4.12., 4.14. ~ 4.15.)**
– 감사 : 최희규(서울권), 정창휴(중부권), 윤주호(남부권)

◆ **집행부 회의(4.18.)**
– 회칙 개정안 점검 및 2016년 총회 준비사항 검토 및 점검 등

◆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4.19.)**
– 예산편성소위 위원 : 백경미(상근부협회장), 이종호(서울동부회장), 오병래(충북회장), 김재영(광주전남회장)

◆ **사무국 직원 면접(4.20.)**
– 기획과 등록담당 직원 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사무국 사무실 임시이전(4.20.)**
– 10층 사무국 사무실 석면교체 공사로 1층 공실로 임시 이전(5.27.까지)

◆ **주요 공문 발송**
- 대법원장(4.1.) : 2016년도 법무사등록 전 연수(자격인정자반) 실시 결과 보고
- 법무부장관(4.6.)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각 지방법무사회장(4.15.) : 법무사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
- 법원행정처장(4.19.) : 법무사등록(외국인)에 관한 질의

외부활동 보고

◆ 4.14.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업무협약 및 위촉식(89명 위촉)** – 본지 p8 기사 참조

◆ 4.21.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제23차 정책회의**(박희봉 정책본부장 참석)
– 법조전문자격사 포럼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예정 : 자격사 명의대여 근절 등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향 토론회'(2016.7.6.) 준비 중
– 국회 입법정책지원 등의 활동을 위한 법률정책위원회 추진 관련 논의

◆ 4.25. **제53회 법의 날 행사 참석** (노용성 협회장)

◆ 4.26. **강원회 정기총회 참석**(노용성 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 4.26. **법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외부위원) **만찬 참석**(백경미 상근부협회장)

◆ 4.29. **부산회 정기총회 참석**(노용성 협회장, 박용부 부협회장)

◆ 4.30. **제48회 전국법원법우테니스대회 참석**(노용성 협회장)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16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회의 (2016.4.21.)



제1호 안건

2016년 협회 정기총회 포상자 확정!

- 협회 정기총회(2016.6.29. 개최 예정)에서 시상할 포상 후보자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추천하기로 함.

제2호 안건

상임이사제 관련 회칙 개정, 지방회 의견 수렴해 재논의키로!

- '회칙 등 개정 TF팀'에서 그동안 논의한 협회 회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 등을 설명함.
- 위 TF팀에서 협회 회칙의 전반적인 개정에 관한 제안에 따른 쟁점이 너무 많아 순차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아래의 주요사항에 대해 결정함

① '등기원인증서'에 법무사의 본인확인과 계약 당사자의 확인을 표시(현출)하는 방안의 제안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함.

② 상임이사제에 대한 회칙 개정안은 각 지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함.

기타 토의사항

회무전산화 내용에 관한 회원 아이디어 공모키로!

- 협회와 서울권 5개 지방법무사회가 2016.4.14. 체결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을 공지함.
- 울산지방법무사회에서 제시한 의견(법무사의 중개업 확장, 계약공증제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함.
- 지난 2015회계연도 제9회 회장회(2016.3.31.개최) 결의에 따라 협회 정보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회무전산화 등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이디어 공모 진행과 채권대행 및 비용계산 프로그램 추가 및 블로그의 제작 및 운영에 대해 결정함.

2016회계연도 제1회 공제사업위원회 회의 (2016.4.21.)

-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에서 제안한 ①협회 공제 전담 법무사 신설, ②각 지방회 공제심사위원회 신설, ③공제료의 추가 징수에 대한 안이 모두 통과되었음.

- 공제료의 추가 징수 방안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바, 「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에 "공제회장이 미회수된 공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은 『법무사』지에 기고하는 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함.

2016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회의 (2016.4.21.)

- 2015회계연도 회원연수 대상인원 6,184명 중 6,177명에 대하여 회원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일부 시간 미이수한 법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서면경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법무사 7명의 경우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무사연수원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협회장 명의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기로 결의함.

회칙 개정 TF팀(2016. 4.4., 4.11 회의)

회칙 제·개정안 17개 등 시안 마련, 회장회 보고



「법무사법」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오는 6월 협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협회 회칙 등 제·개정 안에 대해 TF팀 각 조별로 시안을 마련,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TF팀의 시안(구체내용 생략)을 확정하여 회장회에 보고함.

제정(안) : 2개

1. 상임이사회(집행위원회)의 회무집행에 관한 규칙
2. 법무사의 위임인의 확인 의무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 15개

1. 회칙
2. 법무사 등록규칙
3. 손해배상공제규정
4. 협회장 및 부협회장 선거규칙
5. 법무사연수교육원 규칙
6. 윤리위원회 규칙
7. 정보화위원회 규칙
8. 회관관리위원회 규칙
9. 법무사표시·광고 규칙
10. 회지간행규정
11. 사무규정
12. 여비지급규정
13. 법무사보수표
14. 각종 양식
15. 법무사윤리장전

기존 규칙과 규정 유지 : 2개

1. 감사규칙
2. 법무사신분증 규정

추후 제·개정해야 할 규칙 등 : 3개

1. 협회장 등 당선자에 대한 회무 인수·인계의 규정(제정 필요)
2. 법무사 등 감독지침(「법무사규칙」 확정 후 개정)
3. 법제연구소 규칙(법제연구소에 위임 후 개정)

회칙과 규칙 및 규정(안) 작성시 반영사항

1. 한글화 작업
2. 「법무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및 개정 조문 반영
3. 조문의 현대화 및 맞춤법 정리 : 특히 회칙과 일부 규칙 등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2016. 4.19.회의)

- 지난 2월 「법무사법」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마련한 「법무사규칙」 개정안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등 협회 운영 관련 규정들에 대해 검토하였음.

정보화위원회

- 위원장과 위원들은 회무전산화 실행을 위해 IT업체 3곳을 5회 방문하여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일부 지방회 사무국을 각 1~2회 방문하여 사무국 직원들과 사용내용을 듣고 현재 상황을 파악, 요구사항 등에 대해 협의함.

부동산대응TF팀

(4.2., 4.15. 화상회의)

- 본인확인 서면와 함께 전자등기에 있어서도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인증 모델 수립방안(전자적 본인확인 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전자등기에 있어서 인감증명을 대체할 방안의 일환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방안 검토하고,
- 사실상 동시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공탁제도'를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업무외 시간을 활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함.

(가칭)공익활동 TF팀

(2016. 4.7., 4.20, 4.26. 회의)

- 서울시와 공익법무사단 협약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공익법무사단 활동 운영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우찬호(팀장), 엄덕수, 최영민 법무사를 구성원으로 임명함.
- 공익활동 TF팀은 4.14. 협약식 및 위촉식 개최 준비, 공익법무사 희망장소 모집 및 배정, 각 시장 등 공익활동 현장점검 및 담당자와 협의, 신분증 준비 등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점검 등을 진행 중임.

협회는 지금(지방회·법무사)

지방회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예방



서울서부회(회장 이진수)는 지난 4월 7일(목)에 공상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이 회장은 법무사업계의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에 공 검사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2015회계연도 신입회원 연수 개최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는 지난 4월 7일(목) 오후 4시 30분, 회관 다목적홀에서 신입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신입회원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중진 법무사들이 강사로 나서 경매컨설팅(박재승), 이혼관련 가압류 가처분(유봉성), 민사집행실무 기초(주낙현), 법인등기(최인수) 등 5개 과목을 강연하였으며, 황 회장이 업계동향과 사고 사례에 관해 특강하였다.

경기중앙회는 신입회원들의 열기가 매우 적극적임에 따라 '민사집행실무연구회' 등 회원들의 자치 연구 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법무사회

2016년 제1기 법무사사무원 양성교육 개강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4월 11일, 2016년도 제1기 신규 사무원 양성교육을 개강하였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최종 15명이 선발되어 전 과정을 무료로 교육받게 된다. 부산경상대학 및 연제구청과 산학협동협약을 맺어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무원 양성교육 과정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회기씩 6년째 실시되고 있다.

한편, 배 회장은 이날 교육에서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2016년 연제한마당축제 무료법률상담 실시



부산회는 지난 4월 1~3일, 부산 연제구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개최되었던 '2016 연제한마당축제'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총 169건(등기15, 민사85, 형사13, 상속30, 가사 15, 기타11)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무료법률상담에는 배 회장을 비롯하여 강대성·박성진·박영화·이종만·전종현·정성구 법무사가 참석하였다.

한편, 4월 5일(화)에는 부산 '가덕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배 회장이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총선후보 공약이행 서약식'에 참석하였다. 법무사

법무사

곽종렬 법무사(광주전남회)

전남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약정



곽종렬 법무사(사진 왼쪽에서 네번째)는 지난 4월 6일,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지역 1억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36호 회원으로 가입, 앞으로 5년 동안 1억 원을 성금으로 기부할 것을 약정했다. 곽 법무사는 팔순잔치를 하는 대신 나눔 기부에 동참하기로 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최천수 법무사(충북회)

청원구청에 불우이웃 위한 쌀(1천 만 원 상당) 기탁



최천수 법무사는 지난 3월 23일, 청원구청을 방문해 불우이웃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 최 법무사는 지난해 10월에도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법무사

등록 공고

업무 재개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업무재개월일	사무소	전화번호
인천회	이정호	6463	2016.04.06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10 , 3층(부평동)	032-503-9352
경기중앙회	김성태	8368	2016.03.2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8, 2층 203호	031-425-8832
대구경북회	노판곤	8618	2016.03.0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2 (도동리)	054-791-8845
제주회	이종택	7013	2016.04.01	제주 제주시 중앙로 283, 2층 (이도이동)	064-724-2333

소속 변경 등록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변경년월일	사무소	전화번호
서울중앙→경기중앙	조성화	6686	2016.03.25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 2, 601호 (별양동)	02-3477-4414
서울중앙→경기중앙	백지훈	6436	2016.03.25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로 2, 601호 (별양동)	02-3477-4414
서울중앙→경기중앙	김종명	6789	2016.04.07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00, 603호 (매탄동, 우진빌딩)	031-217-1880
경기중앙→충북	이복영	5612	2016.03.3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28, 2층 (교동리)	043-838-3771
서울중앙→제주	진영배	3911	2016.04.01	제주 제주시 노형동 1296-3 대보코아빌딩 1층	064-711-2306

등록사항 변경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전화번호
서울중앙회	김계향	3217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15층	02-596-1063
서울중앙회	임항수	512	사무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87, 201호 (서초동, 서원빌딩)	02-563-6616
서울중앙회	진희진	9197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6, 6층 603호 (서초동, 경원빌딩)	070-4447-6333
서울중앙회	오성용	9036	사무소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 에이-101 (방배동, 방배롯데캐슬아르떼상가)	02-3471-0600
서울중앙회	정해선	2531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9, 1011호 (서초동, 르네상스오피스텔)	02-596-7682
서울중앙회	서제진	6321	사무소	서울 강남구 일원로3길77, 1층 (일원동)	02-588-9707
서울중앙회	강성룡	2695	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520호 (서소문동, 유원빌딩)	02-310-9252
서울중앙회	조영원	6407	사무소	서울 종로구 난계로29가길 14, 302호 (숭인동)	02-2264-0441
서울중앙회	홍창표	7770	사무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3	02-577-3015
서울중앙회	손인근	2868	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6, 1115호 (서소문동, 유원빌딩)	02-757-5038
서울동부회	문정영	7752	사무소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32, 410호 (가락동, 현진올림피아오피스텔)	02-404-9982
서울남부회	정연준	5607	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4, 503호 (신정동, 도림빌딩)	02-2695-7334
서울북부회	김현동	8645	사무소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9, 502호 (창동,제일빌딩)	02-954-0827
서울북부회	김성호	2631	사무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21, 1층 (공릉동, 하이서울빌딩)	02-948-1387
서울북부회	윤기선	7107	사무소	서울 도봉구 방학로6길 8, 2층 (방학동)	02-975-4451
인천회	김현식	6390	사무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6, 102호 (당하동)	032-564-5990
인천회	박승학	4768	사무소	인천 남구 구월남로 8, 1층 (주안동)	032-719-2355
인천회	최소영	8505	사무소	인천 남구 학익소로 19, 602호 (학익동, 한림법조타운)	032-864-8600
인천회	최연우	2338	사무소	인천 남구 경원대로 869, 1208호 (주안동, 르네상스빌딩)	032-420-1155
인천회	김연수	8103	사무소	인천 남구 주안로213번길 10-1, 3층 (주안동, 황룡빌딩)	032-868-8687
인천회	김용완	7992	사무소	인천 남구 주안로213번길 10-1, 3층 (주안동, 황룡빌딩)	032-868-8687
인천회	이종복	2700	사무소	인천 남구 주안로213번길 10-1, 3층 (주안동, 황룡빌딩)	032-868-8687
인천회	한익성	8926	사무소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93, 802호 (논현동, 보미리즌텔)	032-429-9058
인천회	백경택	3081	사무소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28-1, 4층 (구월동)	032-421-0022
인천회	송춘석	9119	사무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 504호 (상동, 정우프라자)	032-555-5995
인천회	이영근	6293	사무소	인천 남구 소성로 153, 203호 (학익동, 중앙빌딩)	032-876-5500

등록 공고

등록사항 변경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전화번호
인천회	강문수	8241	사무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86, 901호 (중동, 현해탑프라자)	032-341-7227
인천회	고의균	3328	사무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607호 (상동, 송내리더스텔)	032-327-8880
경기중앙회	윤경수	7272	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9호 (고잔동, 한남법조타운)	031-403-0067
경기중앙회	임종수	9112	사무소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900, 2층 211호 (송정동, 로얄플라자센타)	031-762-9990
경기중앙회	강민호	7720	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406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031-385-1949
경기중앙회	최상원	9221	사무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12, 504호 (구갈동, 스카이프라자)	031-204-6100
경기중앙회	정규철	7650	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6, 705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031-486-2506
경기중앙회	김천수	5459	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409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031-408-3352
경기중앙회	최인수	3231	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140, 1층 (하동)	031-211-1722
강원회	최인용	7979	사무소	강원 춘천시 공지로 274 (효자동)	033-263-2035
대전세종충남회	김광수	9204	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1511호 (둔산동, 아너스빌오피스텔)	042-489-8973
대전세종충남회	이제건	7622	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로 104 (원성동)	041-563-0100
대전세종충남회	이만섭	5226	사무소	세종시 보듬3로 8-20, 225호 (도담동, 한신휴시티)	044-867-9940
대전세종충남회	김재성	6509	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통정3로 59, 3층 (신방동)	041-566-9500
대전세종충남회	이기호	7018	사무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상성길 81-19	041-668-2000
대구경북회	도재기	7616	사무소	대구 서구 평리로 254, 비-306 (내당동, 삼능빌딩)	053-422-8766
부산회	이무길	3499	사무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402호 (거제동, 효정빌딩)	051-507-7105
경남회	김형채	8865	사무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4-8, 101호	055-645-0113
광주전남회	민종문	7658	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 213호 (치평동, 랜드피아)	062-351-2021
광주전남회	김형택	8172	사무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산길 4	061-722-3666
광주전남회	김순임	9146	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94 (지산동)	062-229-0050

휴업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휴업기간
서울중앙회	박상관	9208	2016.03.17 ~ 2018.03.16
서울동부회	최식열	3802	2016.03.01 ~ 2018.02.28
서울동부회	김일기	5987	2016.03.12 ~ 2018.03.11
서울남부회	이규원	8832	2016.03.31 ~ 2018.03.30
인천회	이지은	8348	2016.04.04 ~ 2018.04.03
인천회	황인철	8728	2016.04.04 ~ 2018.04.03
충북회	고영묵	5866	2016.04.01 ~ 2018.03.31
대구경북회	안길찬	1390	2016.04.01 ~ 2016.08.31
부산회	이득우	4516	2016.04.01 ~ 2018.03.01
부산회	박재홍	7380	2016.04.01 ~ 2018.03.31
광주전남회	김윤종	3543	2016.04.01 ~ 2017.03.31
전라북도회	임익문	6591	2016.03.21 ~ 2016.09.20

등록 취소

소속회	성명	등록번호	휴업기간	변경내용
서울중앙회	최강운	6810	2016.03.23	폐업 (2016.03.18)
서울중앙회	이영훈	4086	2016.04.01	폐업 (2016.03.31)
서울남부회	김철	160	2016.04.05	폐업 (2015.03.31)
서울서부회	오영교	2678	2016.03.29	사망 (2015.12.19)
경기중앙회	하진명	9045	2016.03.23	사망 (2016.01.17)
경기중앙회	김병열	3605	2016.03.29	사망 (2016.03.02)
경기중앙회	홍종수	5179	2016.03.29	폐업 (2016.03.25)
대전세종충남회	김성찬	4108	2016.03.22	사망 (2016.03.11)
대전세종충남회	조숙연	580	2016.03.25	폐업 (2016.03.25)
부산회	김용대	1611	2016.03.22	폐업 (2016.03.17)
부산회	김중철	4201	2016.04.04	사망 (2016.03.12)
부산회	김남대	7693	2016.04.07	사망 (2016.03.21)
경남회	형정욱	2448	2016.03.30	폐업 (2016.03.24)
경남회	천봉기	7239	2016.04.04	기타 (2016.03.10)
광주전남회	김용철	3403	2016.03.23	폐업 (2016.03.21)
광주전남회	김수윤	3680	2016.03.31	폐업 (2016.03.25)
광주전남회	안형석	2329	2016.04.04	기타 (2016.04.04)
전라북도회	이병일	2815	2016.04.07	폐업 (2016.04.04)

동정 · 등록

신규등록

· 범례 : 등(..)
→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 게재 순서는 소속회별 등록일 순



유영승 » 서울중앙회
등 9511(2016.03.11)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길 12, 4층 (사당동)
Tel : 02-587-2277



황운하 » 서울남부회
등 9540(2016.04.0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21 정곡빌딩 10층
Tel : 02-3775-3802



황기한 » 서울북부회
등 9522(2016.03.29)

서울 노원구 동일로174길 13 (공릉동)
Tel : 02-972-8633



조영상 » 인천회
등 9512(2016.03.15)

인천 남구 소성로 171, 105호 (학익동, 대흥빌딩)
Tel : 032-865-7001



최병호 » 인천회
등 9529(2016.03.31)

인천 남구 소성로 175-30, 1층(학익동, 시종빌딩)
Tel : 032-222-9893



이은수 » 인천회
등 9530(2016.03.31)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10, 201호 (사우동, 창주빌딩)
Tel : 031-988-0032



한홍수 » 경기중앙회
등 9514(2016.03.22)

경기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15, 3층 (안양동, 농협빌딩)
Tel : 031-445-4700



유안석 » 경기중앙회
등 9528(2016.03.31)

경기 평택시 평택5로 257, 2층 203호 (비전동)
Tel : 031-657-8127



강희성 » 경기중앙회
등 9531(2016.04.0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66, 103호 (고잔동, 하눌법조빌딩)
Tel : 031-506-0001



김봉국 » 경기중앙회
등 9532(2016.04.01)

경기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6-15, 802호 (반송동, 지성프라자)
Tel : 031-8003-6421



나계주 » 경기중앙회
등 9533(2016.04.0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80, 303호 (동남프라자)
Tel : 031-608-0011



조복기 » 경기중앙회
등 9534(2016.04.04)

경기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에이-302 (흥덕IT밸리)
Tel : 031-340-1655



오완섭 » 경기중앙회
등 9535(2016.04.04)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3층 (관양동, 우양타운)
Tel : 031-425-0120



전대배 » 경기중앙회
등 9536(2016.04.04)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8층 (이의동)
Tel : 031-259-6384



김윤중 » 경기중앙회
등 9541(2016.04.06)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7, 202호 (현화리, 대건빌딩)
Tel : 031-684-8940



김정인 » 강원회
등 9523(2016.03.30)

강원 춘천시 남춘로55번길 3, 2층 (효자2동)
Tel : 033-253-1577



이재준 » 강원회
등 9524(2016.03.30)

강원 원주시 평원초교길 32 (단계동)
Tel : 033-735-9390



임영희 » 대전세종충남회
등 9515(2016.03.23)

대전 중구 중앙로156번길 7 (은행동)
Tel : 042-256-2155



진영철 » 대전세종충남회
등 9525(2016.03.30)

대전 서구 둔산로137번길 44, 206호 (둔산동, 서림빌딩)
Tel : 042-471-9895



조창영 » 충북회
등 9513(2016.03.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86 청풍로펌빌딩 1층
Tel : 043-291-0077



정성욱 » 대구경북회
등 9516(2016.03.28)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6-6, 2층 (삼락동)
Tel : 054-432-1120



박헌백 » 대구경북회
등 9521(2016.03.29)

경북 영천시 시청남길 20, 2층 (문외동)
Tel : 054-331-7889



나영호 » 대구경북회
등 9542(2016.04.06)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 302-205 (용산동, 롯데캐슬아파트상가)
Tel : 053-567-9397



강영숙 » 대구경북회
등 9543(2016.04.06)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3, 302-205 (용산동, 롯데캐슬아파트상가)
Tel : 053-567-9397



이윤석 » 부산회
등 9517(2016.03.28)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04 (하단동)
Tel : 051-205-1873



김병호 » 부산회
등 9520(2016.03.29)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301호 (거제동, 협성프라자)
Tel : 051-717-3099



곽규정 » 부산회
등 9526(2016.03.30)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1, 302호 (거제동, 효정빌딩)
Tel : 051-714-7055



김정렬 » 경남회
등 9518(2016.03.29)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2
Tel : 055-674-1988



하재철 » 경남회
등 9519(2016.03.29)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4-8, 1층 103호 (동달리)
Tel : 055-648-7788



노경선 》 경남회
등 9537(2016.04.05)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3
Tel : 055-933-8893



강헌구 》 경남회
등 9538(2016.04.05)

경남 김해시 내동 1071-1 김해법조타운 109호
Tel : 055-326-2277



최상열 》 경남회
등 9539(2016.04.05)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27번길 1
Tel : 055-265-8333



김도현 》 광주전남회
등 9544(2016.04.06)

전남 순천시 왕지로 28 제이제이빌딩 3층
Tel : 061-727-6152



구형권 》 전라북도회
등 9527(2016.03.30)

전북 김제시 중앙로 233
Tel : 063-542-9889

2016년 협회 및 각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협회·지방회	개최 일시	개최 장소	비 고
협 회	6. 29.(수), 11:00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서울중앙회	5. 13.(금), 10:30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볼룸	회장선거
서울동부회	5. 24.(화), 11:00	서울올림픽 파크텔	회장선거
서울남부회	5. 17.(화), 11:00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회장선거
서울북부회	5. 18.(수), 11:00	W웨딩홀 6층	회장선거
서울서부회	5. 20.(금), 11:00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	회장선거
경기북부회	5. 19.(목), 11:00	의정부 컨벤션센터 웨딩부페	회장선거
인 천 회	5. 10.(화), 11:00	라마다 송도 호텔 2층 다빈치홀	
경기중앙회	5. 16.(월), 11:00	호텔캐슬 별관2층 그랜드볼룸	
강 원 회	4. 26.(화), 11:00	춘천베어스호텔 2층 소양홀	
대전세종충남회	5. 25.(수), 10:30	유성호텔 8층 회의실	
충 북 회	5. 12.(목), 11:00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대구경북회	5. 27.(금), 11:00	대구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부 산 회	4. 29.(금), 11:00	호텔농심 2층 대청홀	회장선거
울 산 회	5. 26.(목), 11:00	롯데호텔 울산 크리스탈볼룸	
경 남 회	5. 3.(화), 11:00	창원호텔 아트홀	회장선거
광주전남회	5. 2.(월), 11:00	신양파크호텔	
전라북도회	5. 23.(월), 11:00	르윈호텔	
제 주 회	5. 11.(수), 11:00	제주칼호텔 2층	

내가 만난 법무사

서정철(가명) /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 농민

사기미수로 수감된 형의 보석허가신청, 형사전문 K법무사를 만나해결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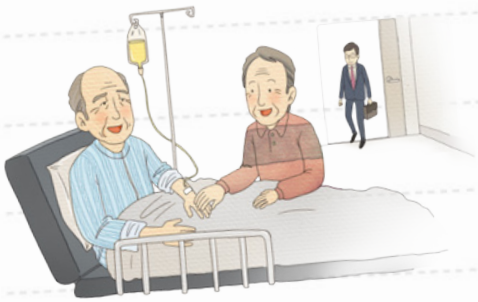


강원도 동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부입니다. 작년 8월 경, 이혼해 혼자 살고 있던 형님이 사기미수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형님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의 합병증이 심해져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신청했지만, 이틀 만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가족이 없는 형님을 위해 보석이 가능한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던 중, 누군가 서울남부지방법원 근처에 가면 형사사건에 조예가 깊은 법무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수소문한 끝에 K법무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법원에 제출했던 진정서, 병원 진단서, 약처방전 등 수북한 서류더미를 꼼꼼히 살펴보던 K법무사님은 "보석허가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마치 형님과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원하게 정리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신청서 제출 2주 후, 마침내 형님은 보석허가를 받았고, 지금은 병원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되어 있는 형사사건은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만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사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만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사

일러스트 _ 이윤미

이럴 때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거래처로부터 오랫동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하고 싶습니다.

양계장을 지으려고 군청에 낸 신축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친구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법무사가 하는 일' 시리즈 ❺

소송(민사·형사·행정·회사 관련)



법무사도
'소송'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민·형사, 행정, 회사 관련
소송에 필요한 지급명령서, 각종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입증 서류 등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모든 법률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상고심, 재판 외 화해 등에서도
법무사의 조력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제1심 민사소송뿐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까지도 조력이
가능하며, 형사사건에서도 고소장과 진정서의 작성, 탄원서와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판과 재판 외의 화해, 소송의 종료 과정에서
후유 사건이 남지 않도록 원·피고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법무사'를 만나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 '마을 이름'을 쳐 보세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법무사 찾기 사무소 주소 논현동 검색

대한법무사협회
www.kabl.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10층 (논현동, 법무사회관)
Tel. 02)511-1906~9, Fax. 02)546-4362